◉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65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15호(2021.09.29)로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과(031-228-336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2부(031-250-82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1.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금곡동 일원(변경없음)

3) 면　적 (변경)

- 기정 : 970,644㎡
- 변경 : 967,832㎡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기정) 김 현 준 → (변경) 이 한 준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금곡동 일원

3) 면　적 (변경)

- 기정 : 970,644㎡
- 변경 : 967,832㎡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기정) 김 현 준 → (변경) 이 한 준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기정	409,363	7,779	18,628	
	변경	398,726	7,787	18,648	
단독주택	기정	64,309	189	474	
	변경	47,797	130	326	
점포형	기정	30,561	113	283	
	변경	14,185	55	138	
블록형	기정	10,441	29	73	
	변경	10,370	28	70	
생태마을	기정	23,307	47	118	
	변경	23,242	47	118	
공동주택	기정	345,054	7,590	18,154	
	변경	350,929	7,657	18,322	
60㎡미만	기정	153,751	4,652	10,807	
	변경	153,820	4,576	10,617	
60㎡~85㎡	기정	144,215	2,313	5,783	
	변경	150,598	2,448	6,122	
85㎡ 초과	기정	47,088	625	1,564	
	변경	46,511	633	1,583	

주)세대당 인구는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지표(2.5인/호) 적용
(행복주택은 2.1인/세대,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은 2.65인/세대 적용)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154kv 호매실, 서수원 변전소에서 공급 예정, 주변지역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지구 내 신설 변전소를 통해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삼천리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휴세스에서 지역난방 방식으로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구분	등급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60	61	10,009	9,686	감) 323	172,832	173,631	증) 799
일반	계		40	40	8,893	8,524	감) 369	164,716	165,074	증) 358
	대로	소계	2	5	1,893	2,712	증) 819	40,448	61,489	증) 21,041
		3	2	5	1,893	2,712	증) 819	40,448	61,489	증) 21,041
	중로	소계	22	23	5,572	4,938	감) 634	111,436	96,253	감) 15,183
		1	7	7	2,724	2,297	감) 427	71,098	56,997	감) 14,101
		2	6	9	830	1,466	증) 636	13,466	24,109	증) 10,643
		3	9	7	2,018	1,175	감) 843	26,872	15,148	감) 11,724
	소로	소계	16	12	1,428	874	감) 554	12,832	7,332	감) 5,500
		1	3	2	242	71	감) 171	2,728	837	감) 1,891
		2	13	5	1,186	760	감) 426	10,104	6,237	감) 3,867
		3	-	5	-	43	증) 43	-	258	증) 258
보행자	계		20	21	1,116	1,162	증) 46	8,116	8,557	증) 441
	중로	소계	2	2	31	34	증) 3	466	524	증) 58
		2	2	2	31	34	증) 3	466	524	증) 58
	소로	소계	18	19	1,085	1,128	증) 43	7,650	8,033	증) 383
		1	2	3	83	166	증) 83	836	1,726	증) 890
		2	10	4	524	282	감) 242	4,067	2,264	감) 1,803
		3	6	12	478	680	증) 202	2,747	4,043	증) 1,296

주)가감속차로, 가각 및 하천중복(1,010㎡) 등 포함

○ 노외주차장 계획(변경)

- 기정: 3개소, 5,849㎡ → 변경: 5개소, 9,176㎡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용지보상	968	-	154	420	356	30	8	-	
조성공사	968	-	8	4	20	81	399	456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8,005	-	98	2,390	1,908	314	1,534	1,761	
용지비	4,279	-	67	2,376	1,833	2	7	-	
조성비	3,726	-	31	14	75	312	1,533	1,761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2017년 3월 28일) ~ 2023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괄(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970,644	967,832	감) 2,812	100.0	100.0	-	-
주택건설용지	소 계			420,258	414,424	감) 5,834	43.3	42.8	감) 0.5	-
	단 독 주 택			41,002	24,555	감) 16,447	4.3	2.6	감) 1.7	-
	생 태 마 을			23,307	23,242	감) 65	2.4	2.4	-	-
	공 동 주 택			345,054	350,929	증) 5,875	35.5	36.2	증) 0.7	-
	근린생활시설			10,895	15,698	증) 4,803	1.1	1.6	감) 0.5	-
공공시설용지	소 계			550,386	553,408	증) 3,022	56.7	57.2	증) 0.5	-
	상업업무	소 계		27,928	23,221	감) 4,707	2.9	2.4	감) 0.5	-
		상 업 시 설		18,432	18,202	감) 230	1.9	1.9	-	-
		업 무 시 설		9,496	5,019	감) 4,477	1.0	0.5	감) 0.5	-
	도시지원시설	소 계		66,849	74,886	증) 8,037	6.9	7.8	증) 0.9	-
		도시지원시설		53,760	53,760	-	5.5	5.5	-	-
		주 차 장		5,849	9,176	증) 3,327	0.6	1.0	증) 0.4	· 3개소→5개소
		종 교 시 설		2,679	2,673	감) 6	0.3	0.3	-	· 2개소
		변 전 소		4,561	4,561	-	0.5	0.5	-	· 1개소
		복합커뮤니티		-	4,716	증) 4,716	-	0.5	증) 0.5	· 신설 1개소
	공원녹지	소 계		257,236	255,979	감) 1,257	26.5	26.4	감) 0.1	
		공원	소 계	212,402	221,347	증) 8,945	21.8	22.9	증) 1.1	
			소 공 원	-	8,166	증) 8,166	-	0.9	증) 0.9	· 신설 1개소
			근린공원	198,455	186,122	감) 12,333	20.4	19.2	감) 1.2	· 3개소→2개소
			문화공원	-	8,741	증) 8,741	-	0.9	증) 0.9	· 신설 1개소
			수변공원	13,947	18,318	증) 4,371	1.4	1.9	증) 0.5	· 1개소 · 저류지 중복결정 면적(10,934㎡) 미포함
		녹지	소 계	14,434	6,147	감) 8,287	1.5	0.6	감) 0.9	-
			완충녹지	8,524	2,113	감) 6,411	0.9	0.2	감) 0.7	· 7개소→2개소
			경관녹지	5,910	3,430	감) 2,480	0.6	0.3	감) 0.3	· 4개소→1개소
			연결녹지	-	604	증) 604	-	0.1	증) 0.1	· 신설 1개소
		공 공 공 지		6,357	3,881	감) 2,476	0.7	0.4	감) 0.3	· 8개소→5개소
		하 천		13,109	13,670	증) 561	1.4	1.4	-	· 당수천
		저 류 지		10,934	10,934	-	1.1	1.1	-	· 1개소(수변공원 중복결정)
	교육시설	소 계		25,541	25,691	증) 150	2.6	2.6	-	-
		초 등 학 교		12,937	12,937	-	1.3	1.3	-	· 1개소
		중 학 교		12,604	12,754	증) 150	1.3	1.3	-	· 1개소
	도로	소 계		172,832	173,631	증) 799	17.8	18.0	증) 0.2	-
		도 로		164,716	165,074	증) 358	17.0	17.1	증) 0.1	-
		보행자도로		8,116	8,557	증) 441	0.8	0.9	증) 0.1	-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총괄(변경)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기정	409,363	7,779	18,628	
	변경	398,726	7,787	18,648	
단독주택	기정	64,309	189	474	
	변경	47,797	130	326	
점포형	기정	30,561	113	283	
	변경	14,185	55	138	
블록형	기정	10,441	29	73	
	변경	10,370	28	70	
생태마을	기정	23,307	47	118	
	변경	23,242	47	118	
공동주택	기정	345,054	7,590	18,154	
	변경	350,929	7,657	18,322	
60㎡미만	기정	153,751	4,652	10,807	
	변경	153,820	4,576	10,617	
60㎡~85㎡	기정	144,215	2,313	5,783	
	변경	150,598	2,448	6,122	
85㎡ 초과	기정	47,088	625	1,564	
	변경	46,511	633	1,583	

주)세대당 인구는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지표(2.5인/호) 적용
(행복주택은 2.1인/세대,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은 2.65인/세대 적용)

○ 용지별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

- 기정

블 럭		면적(㎡)	평균평형(㎡)	수용호수(호)	구성비(%)	수용인구(인)	용적률(%)	비고
합 계		409,363	-	7,779	100.0	18,628	-	-
단독주택		64,309	-	189	2.5	474	-	-
점포형		30,561	270	113	1.5	283	-	-
블록형		10,441	360	29	0.4	73		-
생태마을		23,307	490	47	0.6	118	-	-
공동주택		345,054	-	7,590	97.5	18,154	-	-
60㎡ 이하	소계	153,751	-	4,652	59.6	10,807	-	-
	A-1BL	33,110	54	1,350	17.3	2,883	215	행복주택
		3,215	45	150	1.9	375		영구임대
	A-2BL	27,993	54	1,150	14.8	2,455	215	행복주택
	A-3BL	12,570	80	266	3.4	665	170	공공분양(신혼희망)
		6,285		134	1.7	356		행복주택(신혼희망)
	A-4BL	19,192	80	406	5.2	1,015	170	공공분양(신혼희망)
		9,596		204	2.6	541		행복주택(신혼희망)
	A-5BL	20,381	80	484	6.2	1,210	190	공공분양(신혼희망)
		10,190		242	3.1	642		행복주택(신혼희망)
	B-1BL	11,219	80	266	3.4	665	190	공공분양
60~85㎡	소계	144,215	-	2,313	29.8	5,783	-	-
	B-1BL	14,278	109	248	3.2	620	190	공공분양
	C-1BL	31,481	109	490	6.3	1,225	170	일반분양
	C-2BL	20,534	109	320	4.1	800	170	일반분양
	C-3BL	30,833	109	452	5.8	1,130	160	일반분양
	D-1BL	9,001	109	140	1.8	350	170	일반분양
	D-2BL	15,557	109	271	3.5	678	190	일반분양
	D-3BL	22,531	109	392	5.1	980	190	일반분양
85㎡ 초과	소계	47,088	-	625	8.1	1,564	-	-
	D-1BL	9,000	140	109	1.4	273	170	일반분양
	D-2BL	15,557	140	211	2.7	528	190	일반분양
	D-3BL	22,531	140	305	4.0	763	190	일반분양

주1) 세대당 인구는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지표(2.5인/호) 적용
(행복주택은 2.1인/세대,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은 2.65인/세대 적용)

주2)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출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주3) B-1BL는 60㎡이하와 60~85㎡의 혼합형이고, D-1BL, D-2BL, D-3BL는 60~85㎡와 85㎡초과의 혼합형임

- 변경

블 럭		면적(㎡)	평균평형(㎡)	수용호수(호)	구성비(%)	수용인구(인)	용적률(%)	비고
합 계		398,726	-	7,787	100.0	18,648	-	-
단독주택		47,797	-	130	1.7	326	-	-
점포형		14,185	270	55	0.7	138	100	-
블록형		10,370	360	28	0.4	70	100	-
생태마을		23,242	490	47	0.6	118	100	-
공동주택		350,929	-	7,657	98.3	18,322	-	-
60㎡ 이하	소계	153,820	-	4,576	59.6	10,617	-	-
	A-1BL	33,110	54	1,350	17.3	2,883	215	행복주택
		3,215	45	150	1.9	375		영구임대
	A-2BL	27,993	54	1,150	14.8	2,455	215	행복주택
	A-3BL	12,570	80	266	3.5	665	170	공공분양 (신혼희망)
		6,285		134	1.7	356		행복주택 (신혼희망)
	A-4BL	19,192	80	406	5.2	1,015	170	공공분양 (신혼희망)
		9,596		204	2.6	541		행복주택 (신혼희망)
	A-5BL	20,381	80	484	6.2	1,210	190	공공분양 (신혼희망)
		10,190		242	3.1	642		행복주택 (신혼희망)
	A-6BL	1,194	56	-	-	-	165	통합공공임대
	B-2BL	10,094	88	190	2.4	475	165	공공분양
60 ~ 85㎡	소계	150,598	-	2,448	30.7	6,122	-	-
	B-1BL	19,736	109	326	4.2	815	180	공공분양
	B-2BL	4,326	112	64	-	160	165	
	C-1BL	16,706	109	230	3.0	575	150	민간임대
	C-2BL	15,522	109	257	3.3	643	180	일반분양
	C-3BL	30,833	109	452	5.8	1,130	160	
	C-4BL	13,938	109	243	3.1	608	190	
	C-5BL	378	112	-	-	-	175	
	D-3BL	22,531	109	392	5.0	980	190	
	M-1BL	7,944	109	145	1.9	363	220 (주거197)	일반분양 (주상복합)
	M-2BL	11,584	109	210	2.7	525	220 (주거197)	
	M-3BL	7,100	109	129	1.7	323	220 (주거197)	
85㎡ 초과	소계	46,511	-	633	8.1	1,583	-	-
	C-2BL	6,652	140	86	1.1	215	180	일반분양
	C-4BL	5,974	140	82	1.1	205	190	
	D-3BL	22,531	140	305	3.9	763	190	
	M-1BL	3,404	140	48	0.6	120	220 (주거197)	일반분양 (주상복합)
	M-2BL	4,965	140	70	0.9	175	220 (주거197)	
	M-3BL	2,985	140	42	0.5	105	220 (주거197)	

주1) 세대당 인구는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지표(2.5인/호) 적용
(행복주택은 2.1인/세대,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은 2.65인/세대 적용)

주2)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출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주3) C-2, C-4, D-3, M-1, M-2, M-3은 60~85㎡와 85㎡초과의 혼합형임

주4) A-6, C-5는 수원당수2지구 지구경계와 걸쳐있는 블록으로, 세대수 및 인구수는 수원당수지구에서 제외되었음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3개소	10,895	
	변경		8개소	15,698	
근린생활 시설용지	기정	1	당수동 330-2답 일원	2,080	
	변경		당수동 249-15답 일원	562	
	기정	2	당수동 249-1전 일원	4,515	
	기정	3	당수동 330-1전 일원	4,300	
	신설	4	당수동 447-2전 일원	50	
	신설	5	당수동 477-1전 일원	1,669	
	신설	6	당수동 472임 일원	2,074	
	신설	7	당수동 439-2전 일원	1,893	
	신설	8	당수동 845답 일원	635	

3) 공공시설용지 계획(변경)

○ 상업시설용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4개소	18,432	
	변경		6개소	18,202	
상업시설용지	기정	1	당수동 434대 일원	4,018	
	변경			2,336	
	기정	2	당수동 388-19전 일원	5,669	
	변경			4,970	
	기정	3	당수동 434대 일원	6,531	
	기정	4	당수동 388-19전 일원	2,214	
	신설	5	당수동 688-1도 일원	2,151	

○ 업무시설용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2개소	9,496	
	변경		1개소	5,019	
업무시설용지	폐지	1	당수동 388-19전 일원	4,477	
	변경	2	당수동 388-19전 일원	5,019	

○ 도시지원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7개소	53,760	
도시지원 시설용지	1	당수동 345-5답 일원	6,338	
	2	당수동 405-6임 일원	6,377	
	3	당수동 388-19전 일원	4,339	
	4	당수동 405-10임 일원	5,110	
	5	당수동 388-19전 일원	8,540	
	6	당수동 388-19전 일원	12,332	
	7	당수동 388-19전 일원	10,724	

○ 종교시설용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2개소	2,679	
	변경		2개소	2,673	
종교시설용지	기정	1	당수동 388-19전 일원	1,589	
	기정	2	금곡동 113-1임 일원	1,090	무학사 존치
	변경			1,084	

4)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 도로 계획(변경)

구분	등급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60	61	10,009	9,686	감) 323	172,832	173,631	증) 799
일반	계		40	40	8,893	8,524	감) 369	164,716	165,074	증) 358
	대로	소계	2	5	1,893	2,712	증) 819	40,448	61,489	증) 12,562
		3	2	5	1,893	2,712	증) 819	40,448	41,489	증) 12,562
	중로	소계	22	23	5,572	4,938	감) 634	111,436	96,253	감) 6,670
		1	7	7	2,724	2,297	감)427	71,098	56,997	감) 5,588
		2	6	9	830	1,466	증) 636	13,466	24,109	증) 10,643
		3	9	7	2,018	1,175	감) 843	26,872	15,148	감) 11,724
	소로	소계	16	12	1,428	874	감) 554	12,832	7,332	감) 5,534
		1	3	2	242	71	감) 171	2,728	837	감) 1,925
		2	13	5	1,186	760	감) 426	10,104	6,237	감) 3,867
		3	-	5	-	43	증) 43	-	258	증) 258
보행자	계		20	21	1,116	1,162	증) 46	8,116	8,557	증) 441
	중로	소계	2	2	31	34	증) 3	466	524	증) 58
		2	2	2	31	34	증) 3	466	524	증) 58
	소로	소계	18	19	1,085	1,128	증) 43	7,650	8,033	증) 383
		1	2	3	83	166	증) 83	836	1,726	증) 894
		2	10	4	524	282	감) 242	4,067	2,264	감) 1,808
		3	6	12	478	680	증) 202	2,747	4,043	증) 1,297

주) 가감속차로, 가각 및 하천중복(1,010㎡) 등 포함

○ 주차장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3개소	5,849	
	변경		5개소	9,176	
노외주차장	기정	1	당수동 437-6대 일원	1,359	
	변경		당수동 249-15답 일원	1,500	
	기정	2	당수동 388-19전 일원	1,982	
	기정	3	당수동 388-19전 일원	2,508	
	신설	4	당수동 437-6대 일원	1,500	
	신설	5	당수동 388-19전 일원	1,686	

○ 공원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4개소	223,336	
		변경		5개소	232,281	
생활권 공 원	소공원	기정	소계	–	–	
		변경		1개소	8,166	
		신설	1	당수동 322-1전 일원	8,166	
	근린 공원	기정	소계	3개소	198,455	
		변경		2개소	186,122	
		폐지	1	당수동 322-1전 일원	10,243	
		기정	2	당수동 480-8임 일원	38,807	
		변경			36,714	
		기정	3	금곡동 산62임 일원	149,405	
		변경			149,408	
주 제 공 원	수변 공원	기정	소계	1개소	24,881	
		변경		1개소	29,252	
		기정	1	당수동 592전 일원	24,881	저류지 중복결정 (10,934㎡)
		변경			29,252	
	문화 공원	기정	소계	–	–	
		변경		1개소	8,741	
		신설	1	당수동 520-4전 일원	8,741	

○ 녹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11개소	14,434	
	변경		4개소	6,147	
완충녹지	기정	소계	7개소	8,524	
	변경		2개소	2,113	
	기정	1	당수동 301-2전 일원	703	
	변경		당수동 249-16전 일원	817	
	폐지	2	당수동 249-15답 일원	705	
	기정	3	당수동 337-11전 일원	1,296	
	폐지	4	당수동 468-3전 일원	2,002	
	폐지	5	당수동 446-6전 일원	2,371	
	폐지	6	당수동 437-6대 일원	632	
	폐지	7	당수동 336-3도 일원	815	
경관녹지	기정	소계	4개소	5,910	
	변경		1개소	3,430	
	폐지	1	당수동 336-3도 일원	1,029	
	폐지	2	금곡동 845-4답 일원	1,174	
	폐지	3	당수동 688-1도 일원	277	
	기정	4	당수동 398-2전 일원	3,430	
연결녹지	기정	소계	–	–	
	변경		1개소	604	
	신설	1	당수동 692전 일원	604	

○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8개소	6,357	
	변경		5개소	3,881	
공공공지	기정	1	당수동 437-19임 일원	1,087	
	기정	2	당수동 388-19전 일원	608	
	폐지	3	당수동 388-19전 일원	474	
	폐지	4	당수동 592전 일원	864	
	기정	5	당수동 592전 일원	924	
	기정	6	금곡동 856전 일원	1,012	
	변경			642	
	기정	7	금곡동 857전 일원	620	
	폐지	8	금곡동 851-1임 일원	768	

○ 하천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4,224	
	변경		1개소	14,680	
하천	기정	1	당수동 727-32구 일원	14,224	
	변경			14,680	

주) 도로 중복구간 면적(1,010㎡) 포함

○ 교육시설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2개소	25,541	
	변경		2개소	25,691	
초등학교	기정	1	당수동 388-19전 일원	12,937	
중학교	기정	1	당수동 330-3답 일원	12,604	
	변경			12,754	

○ 저류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10,934	
저류시설	1	당수동 388-19전 일원	10,934	수변공원 중복결정

○ 전기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4,561	
변전소용지	1	당수동 393-4전 일원	4,561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녹색단지 계획방법

○ 적정 밀도의 산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계획

○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로 에너지의 절감을 도모

○ 수변공간 창출

- 지구 내 하천인 당수천 변에 공원을 계획하여 거주민의 여가생활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변공간 창출

2) 녹색단지 실현방안

○ 에너지 절감형 단지배치

- 토지이용 및 설계의 효율화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형 단지를 조성

○ 녹색교통계획

- 지구 내 통행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계획
-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공원·녹지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을 통한 Green-Network 계획

3) 녹색단지 조성을 위한 기대효과

- 녹색계획의 실천을 통하여 점층적으로 저탄소 녹색세상을 추구하는 탄소중립도시, 탄소제로도시와 같은 신개념의 녹색도시 미래상의 실현이 가능함

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시기	비 고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			41,002	114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승인후	
						협의양도인택지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생태마을			23,307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승인후	
	공동주택	60㎡ 미만	A-1	33,110	1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승인후	행복주택
				3,215						영구임대
			A-2	27,993	1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행복주택
			A-3	12,570	1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분양
				6,285	(1)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행복주택
			A-4	19,192	1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분양
				9,596	(1)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행복주택
			A-5	20,381	1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분양
				10,190	(1)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행복주택
			B-1	11,219	1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분양
		60~85㎡ 미만	B-1	14,278	(1)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분양
			C-1	31,481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C-2	20,534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C-3	30,833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공모당선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D-1	9,001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D-2	15,557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D-3	22,531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공모당선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85㎡ 초과	D-1	9,000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D-2	15,557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D-3	22,531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공모당선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용지			10,895	21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공공시설용지	상업시설			18,432	10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업무시설			9,496	6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도시지원시설용지			53,760	16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기존면적:조성원가80%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교육시설	초등학교		12,937	1	경기도수원교육청	무상	-	승인후	
		중학교		12,604	1	경기도수원교육청	무상	-		
	종교시설			1,589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승인후	
	전기공급설비(변전소)			4,561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주차장			5,849	3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 1. 중소기업활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공급가능

3. ( )는 필지수 산정에서 제외

- 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시기	비 고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			24,555	56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승인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문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문 :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생태마을			23,242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승인후	
	공동주택	60㎡ 이하	A-1	33,110	1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승인후	행복주택
				3,215						영구임대
			A-2	27,993	1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행복주택
			A-3	12,570	1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분양
				6,285	(1)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행복주택
			A-4	19,192	1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분양
				9,596	(1)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행복주택
			A-5	20,381	1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분양
				10,190	(1)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행복주택
			A-6	1,194	1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통합 공공임대
			B-2	10,094	1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분양
		60 ~ 85㎡ 미만	B-1	19,736	1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분양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B-2	4,326	(1)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분양
			C-1	16,706	1	공모당선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주거지원대상자 공급대상면적 조성원가)		민간임대
			C-2	15,522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공모당선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C-3	30,833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공모당선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C-4	13,938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C-5	378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D-3	22,531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공모당선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M-1	7,944	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감정가격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일반분양

			M-2	11,584	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감정가격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일반분양
			M-3	7,100	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감정가격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일반분양
		85㎡ 초과	C-2	6,652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공모당선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C-4	5,974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D-3	22,531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공모당선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M-1	3,404	(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감정가격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일반분양
			M-2	4,965	(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감정가격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일반분양
			M-3	2,985	(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감정가격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일반분양
	근린생활시설용지			15,698	35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공공시설용지	상업시설			18,202	8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업무시설			5,019	2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도시지원시설용지			53,760	16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기존면적:조성원가80%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교육시설	초등학교		12,937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승인후	
		중학교		12,754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종교시설			1,589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승인후	
	복합커뮤니티시설			4,716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전기공급설비(변전소)			4,561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주차장			9,176	5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 1. 중소기업활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공급가능
3. ( )는 필지수 산정에서 제외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차.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경기도 수원시 당수동, 금곡동 일원	28.349356	감) 0.002812	28.274001	

주)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경기도 고시 제2021-231호, '21.11.25.) 면적임

2) 위치 : 경기도 수원시 당수동, 금곡동 일원

카.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4]

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붙임1〕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수원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21,138,690.0	-	121,138,690.0	100.0	-
주거지역	소 계	44,488,303.3	감) 6,871.0	44,481,432.3	36.7	
	제1종 전용주거지역	166,682.3	증) 63.0	166,745.3	0.1	
	제1종 일반주거지역	11,966,219.5	감) 46,892.0	11,919,327.5	9.9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06,092.2	증) 45,946.0	20,052,038.2	16.6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044,845.7	감) 63,317.0	9,981,528.7	8.2	
	준 주 거 지 역	2,304,463.6	증) 57,329.0	2,361,792.6	1.9	
상업지역	소 계	5,870,884.2	감) 3,046.0	5,867,838.2	4.8	
	일 반 상 업 지 역	4,194,629.1	감) 3,046.0	4,191,583.1	3.5	
	중 심 상 업 지 역	1,388,231.0	-	1,388,231.0	1.1	
	근 린 상 업 지 역	288,024.1	-	288,024.1	0.2	
공업지역	소 계	4,120,479.0	-	4,120,479.0	3.4	
	일 반 공 업 지 역	3,964,095.0	-	3,964,095.0	3.3	
	준 공 업 지 역	156,384.0	-	156,384.0	0.1	
녹지지역	소 계	66,659,023.5	증) 9,917.0	66,668,940.5	55.1	
	보 전 녹 지 지 역	1,083,333.1	-	1,083,333.1	0.9	
	생 산 녹 지 지 역	7,836,291.3	-	7,836,291.3	6.5	
	자 연 녹 지 지 역	57,739,399.1	증) 9,917.0	57,749,316.1	47.7	

주) 기정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15호, '21.09.29.) 고시 면적임

나.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970,644	감) 2,812	967,832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673,164	감) 6,871	666,293	68.8	
	제1종전용주거지역	37,796	증) 63	37,859	3.9	
	제1종일반주거지역	69,662	감) 46,892	22,770	2.4	
	제2종일반주거지역	49,907	증) 45,946	95,853	9.9	
	제3종일반주거지역	431,826	감) 63,317	368,509	38.1	
	준 주 거 지 역	83,973	증) 57,329	141,302	14.6	
상 업 지 역	소 계	53,044	감) 3,046	49,998	5.2	
	일 반 상 업 지 역	53,044	감) 3,046	49,998	5.2	
녹 지 지 역	소 계	244,436	증) 7,105	251,541	26.0	
	자 연 녹 지 지 역	244,436	증) 7,105	251,541	26.0	

주) 기정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15호, '21.09.29.) 고시 면적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금곡동 일원	제1종전용주거지역	37,859	100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22,770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95,853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68,509	300	
		준주거지역	141,302	400	
		일반상업지역	49,998	800	
		자연녹지지역	251,541	100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3.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 수원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경기도 수원시 당수동, 금곡동 일원	28.349356	감) 0.002812	28.274001	

주) 기정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15호, '21.09.29.) 고시 면적임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	경기도 수원시 당수·금곡동 일원	28.349356㎢ ⇒ 28.274001㎢ 감)0.002812㎢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04	수원당수	경기도 수원시 당수·금곡동 일원	970,644	감) 2,812	967,832	

주) 기정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15호, '21.09.29.) 고시 면적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104	경기도 수원시 당수·금곡동 일원	970,644㎡ ⇒ 967,832㎡ 감)2,812㎡	· 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

- 기정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60	10,009	172,832	12	3,049	74,662	31	2,571	28,103	17	4,389	70,067
일반도로	소계	40	8,893	164,716	10	2,966	73,826	19	2,016	23,570	11	3,911	67,320
	대로	2	1,893	40,448	-	-	-	-	-	-	2	1,893	40,448
	중로	22	5,572	111,436	7	2,724	71,098	6	830	13,466	9	2,018	26,872
	소로	16	1,428	12,832	3	242	2,728	13	1,186	10,104	-	-	-
보행자도로	소계	20	1,116	8,116	2	83	836	12	555	4,533	6	478	2,747
	대로	-	-	-	-	-	-	-	-	-	-	-	-
	중로	2	31	466	-	-	-	2	31	466	-	-	-
	소로	18	1,085	7,650	2	83	836	10	524	4,067	6	478	2,747

주) 가감속차로, 가각 및 하천중복(1,115㎡) 등 포함

- 변경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61	9,686	173,631	12	2,534	59,560	20	2,542	33,134	29	4,610	80,938
일반도로	소계	40	8,524	165,074	9	2,368	57,834	14	2,226	30,346	17	3,930	76,895
	대로	5	2,712	61,489	-	-	-	-	-	-	5	2,712	61,489
	중로	23	4,938	96,253	7	2,297	56,997	9	1,466	24,109	7	1,175	15,148
	소로	12	874	7,332	2	71	837	5	760	6,237	5	43	258
보행자도로	소계	21	1,162	8,557	3	166	1,726	6	316	2,788	12	680	4,043
	대로	-	-	-	-	-	-	-	-	-	-	-	-
	중로	2	34	524	-	-	-	2	34	524	-	-	-
	소로	19	1,128	8,033	3	166	1,726	4	282	2,264	12	680	4,043

주) 가감속차로, 가각 및 하천중복(1,010㎡) 등 포함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29	25~28	보조간선	1,641 (711)	당수동구역계 당수동산25-1임	대1-21 당수동625-185답	일반도로	-	건고69-336	수고09-106
변경	대로	3	29	25~28	보조간선	1,641 (711)	당수동구역계 당수동산25-1임	대1-21 당수동625-185답	일반도로	-	건고69-336	수고09-106 선형변경
기정	대로	3	93	28~34	보조간선	1,247 (1,182)	대로3-29 당수동337-12도	대3-54 금곡동1157-9도	일반도로	경관녹지23	건고06-549 2006.12.20	수고15-20 2015.1.20
변경	대로	3	93	28~34	보조간선	1,247 (1,182)	대로3-29 당수동337-12도	대3-54 금곡동1157-9도	일반도로	경관녹지23	건고06-549 2006.12.20	수고15-20 2015.1.20. 선형변경
신설	대로	3	C	22	집산도로	1,427 (348)	당수동 구역계 당수동 249-4	당수동 구역계 당수동 707-18	일반도로	-	-	2지구중복
기정	중로	1	196	23.5~29.5	집산도로	333	대로3-29 당수동405-10임	중로1-202 당수동388-19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중로	1	197	23.5~29.5	집산도로	314	대로3-93 당수동388-19전	중로1-196 당수동388-19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중로	1	198	26.5~29.5	집산도로	161	대로3-93 당수동363-4유	중로3-77 당수동728-44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중로	1	199	23.5~29.5	집산도로	604	대로3-29 당수동249-1전	중로1-198 당수동728-17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변경	대로	3	A	25~31	집산도로	224	대로3-29 당수동249-1전	중로1-198 당수동437-19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00	23.5~29.5	집산도로	247	대로3-93 당수동388-19전	중로1-199 당수동437-19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변경	대로	3	B	25~31	집산도로	247	대로3-93 당수동388-19전	중로1-199 당수동437-19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중로	1	201	23.5~29.5	집산도로	311	대로3-93 당수동388-19전	중로1-196 당수동388-19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중로	1	202	20.5~26.5	집산도로	754	대로3-93 금곡동850전	중로1-196 당수동388-19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신설	중로	1	2	22	집산도로	549 (151)	대로3-93 당수동 592	중로1-1 당수동 574	일반도로	-	-	2지구중복
신설	중로	1	3	22	집산도로	500 (165)	대로3-93 금곡동 850	중로1-1 당수동 713	일반도로	-	-	2지구중복
기정	중로	2	274	15.5	집산도로	269	중로1-199 당수동480-9임	중로3-77 당수동318-1답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변경	중로	1	A	22	집산도로	269	중로1-199 당수동480-9임	중로1-1 당수동317-1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중로	2	275	15.5	국지도로	76	중로1-199 당수동434대	중로2-277 당수동388-19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중로	2	276	15.5	국지도로	161	중로1-197 당수동388-19전	중로1-201 당수동388-19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중로	2	277	15.5	국지도로	110	중로1-198 당수동388-19전	중로2-281 당수동434대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중로	2	278	15.5	국지도로	48	중로2-276 당수동388-19전	중로2-279 당수동434대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중로	2	279	15.5	국지도로	166	중로2-276 당수동388-19전	중로2-280 당수동434대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중로	2	280	15.5	특수도로	16	중로1-201 당수동388-19전	중로2-279 당수동434대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중로	2	281	15.5	특수도로	15	중로2-277 당수동434대	소로2-1595 당수동434대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7-999 2018.01.04	
신설	중로	2	1	18	집산도로	544 (436)	대로3-93 당수동 434	중로1-1 당수동 산40-1	일반도로	-	-	2지구중복
신설	중로	2	2	15.5	국지도로	254 (135)	중로1-3 금곡동 841-6	중로1-2 당수동 592	일반도로	-	-	2지구중복
신설	중로	2	3	15.5	국지도로	227 (59)	중로1-3 금곡동 841-6	당수동구역계 당수동 692-11	일반도로	-	-	2지구중복
신설	중로	2	A	15.5	국지도로	171	중로2-1 당수동434대	중로2-1 당수동434대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B	15.5	국지도로	26	중로2-A 당수동388-19전	중로2-C 당수동388-19전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C	15.5	특수도로	18	중로2-B 당수동388-19전	근린공원116 당수동388-19전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중로	2	D	15.5	국지도로	264	중로1-2 당수동592전	중로2-1 당수동434대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3	223	12.5	국지도로	27	중로1-199 당수동330-2답	소로1-419 당수동330-2답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중로	3	224	12.5	국지도로	201	대로3-29 당수동339-18전	중로1-199 당수동330-1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중로	3	225	12.5	국지도로	269	대로3-93 당수동347전	중로1-196 당수동405-10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중로	3	226	12.5	국지도로	406	중로1-196 당수동388-19전	지구경계 당수동388-19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중로	3	227	12.5	국지도로	70	중로1-196 당수동388-19전	중로3-226 당수동388-19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중로	3	228	12.5	국지도로	236	중로1-199 당수동437-1전	중로3-77 당수동478-4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중로	3	229	12.5	국지도로	674	대로3-93 금곡동851-1임	중로1-198 당수동448-6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중로	3	230	12.5	국지도로	133	대로3-93 금곡동850전	중로3-229 금곡동845답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중로	3	77	12	집산도로	967 (2)	대로3-29 당수동300전	중로1-198 당수동448임	일반도로	-	수고97-94 1997.7.10	수고13-202 2013.7.1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5	12.5	국지도로	21 (21)	중로2-1 당수동 477-2	수로2-B 당수동 477-2	일반도로	-	-	2지구중복
신설	중로	3	A	12.5	국지도로	190	대로3-A 당수동330-1전	대로3-C 당수동300-3전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B	12.5	국지도로	21	중로1-2 당수동 439잡	소로2-B 당수동 437-6대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1	418	11	국지도로	92	소로1-419 당수동327답	소로2-1580 당수동249-3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1	419	11	국지도로	79	중로3-223 당수동330-3답	소로1-420 당수동249-2답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소로	1	425	11	국지도로	71	중로1-202 금곡동884전	소로1-427 금곡동889전	일반도로	-	국고21-1115 2021.09.29	
폐지	소로	1	420	11	특수도로	12	대로3-29 당수동249-15답	소로1-419 당수동249-15답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소로	1	427	11	특수도로	71	소로1-425 금곡동889전	근린공원119 금곡동889전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21-1115 2021.09.29	
신설	소로	1	7	10	특수도로	267 (35)	중로1-2 당수동 584	중로2-1 당수동 469-2	보행자 전용도로	-	-	2지구중복
신설	소로	1	2	10	국지도로	299 (0)	중로3-3 당수동 703-2	소로1-1 당수동 703-3	일반도로	-	-	2지구중복
신설	소로	1	A	10	특수도로	91 (60)	대로3-93 당수동 851-1임	중로2-3 당수동 693-1전	보행자 전용도로	-	-	2지구중복
기정	소로	2	1316	8~10	집산도로	605 (27)	대로1-19 금곡동52-12전	중3-96 금곡동115-5임	일반도로	-	수고93-126 1994.1.12	수고15-20 2015.1.20
변경	소로	2	1316	8~10	집산도로	605 (27)	대로1-19 금곡동52-12전	중3-96 금곡동115-5임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2	1580	8	국지도로	163	중로3-77 당수동300-3전	소로1-419 당수동249-15답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2	1581	8	국지도로	222	중로1-199 당수동388-19전	소로2-1597 당수동470대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2	1582	8	국지도로	86	중로3-228 당수동437-5임	소로2-1581 당수동469-2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2	1583	8	국지도로	129	소로2-1581 당수동440전	소로2-1596 당수동437-6대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2	1584	8	국지도로	74	소로2-1582 당수동437-5임	소로2-1583 당수동437-6대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2	1585	8	국지도로	55	소로2-1582 당수동472임	소로2-1581 당수동470대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2	1586	8	국지도로	88	소로2-1581 당수동440전	소로2-1584 당수동437-6대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2	1587	8	국지도로	20	중로3-229 금곡동843전	지구계 당수동691-11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2	1588	8	국지도로	20	중로3-229 금곡동847-4전	소로2-1589 금곡동847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2	1589	8	국지도로	119	중로3-230 금곡동845-5답	소로2-1591 금곡동851-1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2	1590	8	국지도로	59	소로2-1589 금곡동846답	소로2-1591 금곡동847-3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2	1591	8	국지도로	124	소로2-1599 금곡동851-1임	소로2-1600 금곡동850전	일반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2	1592	8	특수도로	32	대로3-29 당수동249-16전	소로2-1580 당수동249-16전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소로	2	1593	8	특수도로	51	대로3-29 당수동388-19전	중로3-225 당수동388-19전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소로	2	1594	8	특수도로	107	중로1-201 당수동388-19전	중로3-225 당수동405-6임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2	1595	8	특수도로	152	대로3-93 당수동434대	중로1-199 당수동437-12전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2	1596	8	특수도로	10	중로3-228 당수동437-1전	소로2-1583 당수동437-19임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2	1597	8	특수도로	8	중로3-228 당수동477-1전	소로2-1581 당수동470대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2	1598	8	특수도로	40	중로3-77 당수동441-4답	소로2-1581 당수동441-3답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2	1599	8	특수도로	7	중로3-229 금곡동851-1임	소로2-1591 금곡동851-1임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2	1600	8	특수도로	10	중로3-230 금곡동844전	소로2-1591 금곡동850전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소로	2	1625	8	특수도로	107	대로3-29 당수동405-12전	중로3-226 당수동393-4전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21-1115 2021.09.29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184 (135)	중로3-5 당수동 476-3대	소로2-B 당수동 475전	일반도로	-	-	2지구중복
신설	소로	2	A	8	국지도로	96	중로3-A 당수동296-16전	중로3-A 당수동249-17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B	8	국지도로	282	소로3-L 당수동437-6대	소로2-1 당수동476-3대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C	8	국지도로	220	소로2-B 당수동437-6대	소2-B 당수동472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D	8	특수도로	17	소로2-C 당수동437-19임	근린공원116 당수동437-19임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1741	6	특수도로	189	대로3-B 당수동437-1전	중로3-224 당수동335전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3	1742	6	특수도로	29	중로1-199 당수동437-6대	소로2-1583 당수동439-2전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3	1743	6	특수도로	33	소로2-1583 당수동439-2전	소로2-1586 당수동439잡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소로	3	1744	6	특수도로	184	중로1-202 금곡동851-2임	수변공원105 금곡동864답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3	1745	6	특수도로	25	소로3-1589 금곡동847전	소로2-1591 금곡동847-3임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소로	3	1746	6	특수도로	17	소로2-1591 금곡동847-3임	공개공지 200 금곡동851-1임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7-999 2018.01.04	
신설	소로	3	A	6	국지도로	9	소로2-A 당수동249-16전	소로3-B 당수동249-16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B	6	특수도로	3	소로3-A 당수동249-16전	완충녹지509 당수동249-16전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C	5	특수도로	35	중로3-A 당수동439잡	당수동구역계 당수동437-6대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D	6	특수도로	126	중로1-A 당수동325답	소공원A 당수동332-1전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E	6	특수도로	9	소로3-F 당수동473-1전	근린공원116 당수동473-1전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F	6	국지도로	8	소로2-3 당수동473-1전	소로3-E 당수동473-1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G	6	특수도로	55	소로2-B 당수동471대	근린공원116 당수동473-1전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H	6	특수도로	21	중로2-1 당수동470대	소로2-B 당수동471대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I	6	특수도로	6	소로3-J 당수동437-5임	근린공원116 당수동437-5임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J	6	국지도로	11	소로2-C 당수동472임	소로3-I 당수동437-5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K	6	특수도로	31	소로2-B 당수동437-6대	소로2-C 당수동476-1전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L	6	국지도로	10	소로2-B 당수동437-6대	소로3-M 당수동437-3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M	6	특수도로	7	소로3-L 당수동437-3전	근린공원116 당수동336-3도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N	6	특수도로	14	소로1-14 금곡동740도	수변공원105 금곡동843전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4	6	국지도로	5	소로1-2 당수동 691-1	당수동 740	일반도로	-	-	

주)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29	대로3-29	· 선형변경	· 지구외도로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수원당수지구 계획 반영을 위한 도로 변경
대로3-93	대로3-93	· 선형변경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변경
-	대로3-C	· 도로 신설 - 폭원 : 22m, 연장 : 1,427m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중로1-198	-	· 도로 폐지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중로1-199	대로3-A	· 도로 변경 - 폭원 : 23.5~29.5→25~31m, 연장 : 604→224m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1-200	대로3-B	· 도로 변경 - 폭원 : 23.5~29.5→25~31m, 연장 : 247m	
-	중로1-2	· 도로 신설 - 폭원 : 21m, 연장 : 549m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1-3	· 도로 신설 - 폭원 : 21m, 연장 : 500m	
중로2-274	중로1-A	· 도로 변경 - 폭원 : 15.5→22m, 연장 : 269m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2-275	-	· 도로 폐지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중로2-277	-		
중로2-281	-		
-	중로2-1	· 도로 신설 - 폭원 : 18m, 연장 : 544m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2-2	· 도로 신설 - 폭원 : 15.5m, 연장 : 254m	
-	중로2-3	· 도로 신설 - 폭원 : 15.5m, 연장 : 227m	
-	중로2-A	· 도로 신설 - 폭원 : 15.5m, 연장 : 171m	
-	중로2-B	· 도로 신설 - 폭원 : 15.5m, 연장 : 26m	
-	중로2-C	· 도로 신설 - 폭원 : 15.5m, 연장 : 18m	
-	중로2-D	· 도로 신설 - 폭원 : 15.5m, 연장 : 264m	
중로3-223	-	· 도로 폐지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중로3-228	-		
중로3-229	-		
중로3-230	-		
중로3-77	-		
-	중로3-5	· 도로 신설 - 폭원 : 12.5m, 연장 : 21m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A	· 도로 신설 - 폭원 : 12.5m, 연장 : 187m	
-	중로3-B	· 도로 신설 - 폭원 : 12.5m, 연장 : 21m	
소로1-418	-	· 도로 폐지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1-419	-		
소로1-420	-		
-	소로1-7	· 도로 신설 - 폭원 : 10m, 연장 : 267m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1-2	· 도로 신설 - 폭원 : 10m, 연장 : 299m	
-	소로1-A	· 도로 신설 - 폭원 : 10m, 연장 : 91m	
소로2-1580	-	· 도로 폐지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1581	-		
소로2-1582	-		
소로2-1583	-		

소로2-1584	-		
소로2-1585	-		
소로2-1586	-		
소로2-1587	-		
소로2-1588	-		
소로2-1589	-	· 도로 폐지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1590	-		
소로2-1591	-		
소로2-1592	-		
소로2-1595	-		
소로2-1596	-		
소로2-1597	-		
소로2-1598	-		
소로2-1599	-		
소로2-1600	-		
-	소로2-3	· 도로 신설 - 폭원 : 8m, 연장 : 184m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2-A	· 도로 신설 - 폭원 : 8m, 연장 : 96m	
-	소로2-B	· 도로 신설 - 폭원 : 8m, 연장 : 282m	
-	소로2-C	· 도로 신설 - 폭원 : 8m, 연장 : 220m	
-	소로2-D	· 도로 신설 - 폭원 : 8m, 연장 : 17m	
소로3-1742	-	· 도로 폐지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1743	-		
소로3-1745	-		
소로3-1746	-		
-	소로3-A	· 도로 신설 - 폭원 : 6m, 연장 : 9m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B	· 도로 신설 - 폭원 : 6m, 연장 : 3m	
-	소로3-C	· 도로 신설 - 폭원 : 5m, 연장 : 35m	
-	소로3-D	· 도로 신설 - 폭원 : 6m, 연장 : 126m	
-	소로3-E	· 도로 신설 - 폭원 : 6m, 연장 : 9m	
-	소로3-F	· 도로 신설 - 폭원 : 6m, 연장 : 8m	
-	소로3-G	· 도로 신설 - 폭원 : 6m, 연장 : 55m	
-	소로3-H	· 도로 신설 - 폭원 : 6m, 연장 : 21m	
-	소로3-I	· 도로 신설 - 폭원 : 6m, 연장 : 6m	
-	소로3-J	· 도로 신설 - 폭원 : 6m, 연장 : 11m	
-	소로3-K	· 도로 신설 - 폭원 : 6m, 연장 : 31m	
-	소로3-L	· 도로 신설 - 폭원 : 6m, 연장 : 10m	
-	소로3-M	· 도로 신설 - 폭원 : 6m, 연장 : 7m	
-	소로3-N	· 도로 신설 - 폭원 : 6m, 연장 : 14m	
-	소로3-4	· 도로 신설 - 폭원 : 5m, 연장 : 5m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5,849	감) 5,849	-	-	
폐지	183	주차장	당수동 437-6대 일원	1,359	감) 1,359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184	주차장	당수동 388-19전 일원	1,982	감) 1,982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185	주차장	당수동 388-19전 일원	2,508	감) 2,508	-	국고17-999 2018.01.04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83	주차장	· 폐지	· 수원시 협의의견에 따른 주차장 폐지
184	주차장	· 폐지	· 수원시 협의의견에 따른 주차장 폐지
185	주차장	· 폐지	· 수원시 협의의견에 따른 주차장 폐지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223,336	증) 60,307	283,643 (232,281)	-	
신설	A	-	소공원	당수동 322-1전 일원	-	증) 8,166	8,166	-	
폐지	115	-	근린공원	당수동 322-1전 일원	10,243	감) 10,243	-	국고17-999 2018.01.04	
변경	116	-	근린공원	당수동 480-8임 일원	38,807	증) 792	39,599 (36,714)	국고17-999 2018.01.04	
변경	119	-	근린공원	금곡동 산62임 일원	149,405	증) 3	149,408	국고19-716 2019.12.10	
변경	105	-	수변공원	당수동 592전 일원	24,881	증) 37,919	62,800 (29,252)	국고17-999 2018.01.04	유수지18 중복결정 (10,934㎡)
신설	1	-	문화공원	당수동 520-4전 일원	-	증) 23,652	23,652 (8,741)	-	

주) (　　)는 사업지구 내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소공원	· 공원 신설 - 면적 8,166㎡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신설
115	근린공원	· 폐지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폐지
116	근린공원	· 면적 변경 - 면적 38,807㎡ → 39,599㎡ 증) 792㎡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변경
119	근린공원	· 면적 변경 - 면적 149,405㎡ → 149,408㎡ 증) 3㎡	· 무학사(종교2) 존치부지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공원 변경
105	수변공원	· 면적 변경 - 면적 24,881㎡ → 62,800㎡ 증) 37,919㎡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변경
1	문화공원	· 공원 신설 - 면적 23,652㎡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신설

2)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개소	-	-	14,434	감) 5,891	8,543 (6,147)	-	
소 계		2개소	-	-	8,524	감) 6,411	2,113	-	
변경	509	녹지	완충녹지	당수동 301-2전 일원 →당수동 249-16전 일원	703	증) 114	817	국고17-999 2018.01.04	
폐지	510	녹지	완충녹지	당수동 249-15답 일원	705	감) 705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511	녹지	완충녹지	당수동 337-11전 일원	1,296	-	1,296	국고17-999 2018.01.04	
폐지	512	녹지	완충녹지	당수동 468-3전 일원	2,002	감) 2,002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513	녹지	완충녹지	당수동 446-6전 일원	2,371	감) 2,371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514	녹지	완충녹지	당수동 437-6대 일원	632	감) 632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515	녹지	완충녹지	당수동 336-3도 일원	815	감) 815	-	국고17-999 2018.01.04	
소 계		1개소	-	-	5,910	감) 2,480	3,430	-	
폐지	60	녹지	경관녹지	당수동 336-3도 일원	1,029	감) 1,029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61	녹지	경관녹지	금곡동 845-4답 일원	1,174	감) 1,174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62	녹지	경관녹지	당수동 692-16임 일원	277	감) 277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67	녹지	경관녹지	당수동 398-2전 일원	3,430	-	3,430	국고21-1115 2021.09.29	
소 계		1개소	-	-	-	-	3,013 (604)	-	
신설	1	녹지	연결녹지	당수동 692전 일원	-	증) 3,013	3,013 (604)		

주) (　　)는 사업지구 내 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09	완충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703㎡ → 817㎡ 증) 114㎡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녹지 변경
510	완충녹지	· 폐지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녹지 폐지
512	완충녹지		
513	완충녹지		
514	완충녹지		
515	완충녹지		
60	경관녹지		
61	경관녹지		
62	경관녹지		
1	연결녹지	· 녹지 신설 - 면적 3,013㎡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녹지 신설

3)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개소	-	6,357	감) 2,476	3,881	-	
기정	193	공공공지	당수동 437-19임 일원	1,087	-	1,087	국고17-999 2018.01.04	
기정	194	공공공지	당수동 388-19전 일원	608	-	608	국고17-999 2018.01.04	
폐지	195	공공공지	당수동 388-19전 일원	474	감) 474	-	국고17-999 2018.01.04	
폐지	196	공공공지	당수동 592전 일원	864	감) 864	-	국고17-999 2018.01.04	
기정	197	공공공지	당수동 592전 일원	924	-	924	국고17-999 2018.01.04	
변경	198	공공공지	금곡동 856전 일원	1,012	감) 370	642	국고17-999 2018.01.04	
기정	199	공공공지	금곡동 857전 일원	620	-	620	국고17-999 2018.01.04	
폐지	200	공공공지	금곡동 851-1임 일원	768	감) 768	-	국고17-999 2018.01.04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5	공공공지	· 폐지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공지 폐지
196	공공공지		
200	공공공지		
198	공공공지	· 면적 변경 - 면적 1,012㎡ → 642㎡ 감) 370㎡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4,561	-	4,561	-	
기정	27	전기공급설비	당수동 393-4전 일원	4,561	-	4,561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	-	25,541	증) 150	25,691	-	
소 계		1개소	-	-	12,937	-	12,937	-	
기정	110	학교	초등학교	당수동 388-19전 일원	12,937	-	12,937	국고17-999 2018.01.04	
소 계		1개소	-	-	12,604	증) 150	12,754	-	
변경	49	학교	중학교	당수동 330-3답 일원	12,604	증) 150	12,754	국고17-999 2018.01.04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9	학교	· 면적변경 - 면적 12,604㎡ → 12,754㎡ 증)150㎡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학교 변경

마. 방재시설(변경)

1) 하천(변경)

○ 하천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연장(㎞)	폭원(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22	하천	소하천 (당수천)	당수동 산68임	당수동 625-68구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1.99 (0.84)	4~22	24,913 (14,224)	수고 09-94 (2009.4.7)	
변경	22	하천	소하천 (당수천)	당수동 산68임	당수동 625-68구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1.99 (0.84)	4~22	24,913 (14,680)	수고 09-94 (2009.4.7)	

주1) ( )는 사업지구 내 연장 및 면적임
주2) 사업지구 내 도로(1,010㎡)와 중복결정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	하천	· 면적 변경 - 면적 14,224㎡ → 14,680㎡ 증) 456㎡	· 당수 및 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하천 변경

2)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0,934	-	10,934	-	
기정	18	유수지	저류시설	당수동 388-19전 일원	10,934	-	10,934	국고17-999 2018.01.04	

5.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2〕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04	수원당수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동 일원	970,644	감) 2,812	967,83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104	수원당수	· 면적변경 - 970,644㎡→967,832㎡ 감)2,812㎡	· 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

- 기정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	41,002	-	-	41,002	
DH1	1	1,647	-1	당수동 249-17전 일원	275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당수동 249-17전 일원	271	
			-3	당수동 249-17전 일원	273	
			-4	당수동 301-2전 일원	273	
			-5	당수동 301-2전 일원	276	
			-6	당수동 249-16전 일원	279	
	2	1,531	-1	당수동 249-16전 일원	255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당수동 249-16전 일원	255	
			-3	당수동 249-15답 일원	255	
			-4	당수동 249-15답 일원	255	
			-5	당수동 249-15답 일원	255	
			-6	당수동 249-15답 일원	256	
	3	1,456	-1	당수동 249-15답 일원	243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2	당수동 329전 일원	243	
			-3	당수동 328전 일원	243	
			-4	당수동 249-15답 일원	242	
			-5	당수동 730-2도 일원	243	
			-6	당수동 327답 일원	242	
	4	2,703	-1	당수동 299-3답 일원	303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당수동 300-3답 일원	301	
			-3	당수동 249-17답 일원	301	
			-4	당수동 249-17답 일원	301	
			-5	당수동 249-17답 일원	301	
			-6	당수동 249-14전 일원	301	
			-7	당수동 730-2도 일원	301	
			-8	당수동 329전 일원	299	
			-9	당수동 329전 일원	295	
DH2	1	1,295	-1	당수동 470대 일원	255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당수동 471대 일원	260	
			-3	당수동 471대 일원	260	
			-4	당수동 472임 일원	260	
			-5	당수동 437-5임 일원	260	
	2	2,219	-1	당수동 469-1전 일원	293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당수동 469-1전 일원	275	
			-3	당수동 469-2전 일원	275	
			-4	당수동 469-2전 일원	275	
			-5	당수동 469-2전 일원	275	
			-6	당수동 469-2전 일원	275	
			-7	당수동 469-2전 일원	275	
			-8	당수동 469-2전 일원	276	
	3	1,388	-1	당수동 470대 일원	280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당수동 469-2전 일원	269	
			-3	당수동 472임 일원	279	
			-4	당수동 472임 일원	278	
			-5	당수동 469-2전 일원	282	
	4	1,081	-1	당수동 440전 일원	265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당수동 440전 일원	276	
			-3	당수동 440전 일원	267	
			-4	당수동 440전 일원	273	
	5	2,245	-1	당수동 441-3답 일원	280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당수동 441-3답 일원	275	
			-3	당수동 440전 일원	280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4	당수동 440전 일원	280	
			-5	당수동 446-6전 일원	280	
			-6	당수동 446-6전 일원	285	
			-7	당수동 440전 일원	280	
			-8	당수동 446-6전 일원	285	
	6	1,461	-1	당수동 437-5임 일원	289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당수동 437-6대 일원	293	
			-3	당수동 437-6대 일원	293	
			-4	당수동 437-6대 일원	293	
			-5	당수동 437-6대 일원	293	
	7	1,162	-1	당수동 437-6대 일원	291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당수동 439잡 일원	290	
			-3	당수동 437-6대 일원	291	
			-4	당수동 437-6대 일원	290	
	8	1,902	-1	당수동 440전 일원	293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당수동 440전 일원	293	
			-3	당수동 440전 일원	293	
			-4	당수동 439-2전 일원	256	
			-5	당수동 440전 일원	256	
			-6	당수동 440전 일원	256	
			-7	당수동 440전 일원	255	
	9	996	-1	당수동 437-1전 일원	259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당수동 437-6대 일원	245	
			-3	당수동 437-6대 일원	246	
			-4	당수동 437-6대 일원	246	
	10	1,313	-1	당수동 439-2전 일원	263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당수동 440전 일원	263	
			-3	당수동 440전 일원	263	
			-4	당수동 336-3도 일원	263	
			-5	당수동 336-3도 일원	261	
DH3	1	1,560	-1	금곡동 845답 일원	260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금곡동 841-6도 일원	260	
			-3	금곡동 841-6도 일원	260	
			-4	금곡동 841-6도 일원	260	
			-5	금곡동 841-6도 일원	260	
			-6	금곡동 846답 일원	260	
	2	1,367	-1	금곡동 846답 일원	272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금곡동 846답 일원	274	
			-3	금곡동 846답 일원	274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4	금곡동 846답 일원	274	
			-5	금곡동 848답 일원	273	
	3	1,629	-1	금곡동 846답 일원	259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금곡동 846답 일원	260	
			-3	금곡동 847-3임 일원	260	
			-4	금곡동 847전 일원	284	
			-5	금곡동 847전 일원	283	
			-6	금곡동 847-3임 일원	283	
	4	1,080	-1	금곡동 847전 일원	270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금곡동 847-3임 일원	270	
			-3	금곡동 847-3임 일원	270	
			-4	금곡동 851-1임 일원	270	
	5	1,047	-1	금곡동 850전 일원	261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금곡동 850전 일원	263	
			-3	금곡동 851-1임 일원	261	
			-4	금곡동 851-1임 일원	262	
	6	1,479	-1	금곡동 851-1임 일원	239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금곡동 851-1임 일원	239	
			-3	금곡동 851-1임 일원	235	
			-4	금곡동 851-1임 일원	239	
			-5	금곡동 851-1임 일원	242	
			-6	금곡동 851-1임 일원	285	
DH4	-	10,441	-	금곡동 산62임 일원	10,441	○ 획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 변경

블럭명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24,555	-		24,555	
DH1	1	1,075	-1	당수동 249-17전 일원	219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249-17전 일원	227	
			-3	당수동 301-2전 일원	186	
			-4	당수동 301-2전 일원	226	
			-5	당수동 249-16전 일원	217	
	2	837	-1	당수동 249-17전 일원	288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249-17전 일원	274	
			-3	당수동 249-16전 일원	275	

블럭명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3	512	-1	당수동 249-15답 일원	244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249-16전 일원	268	
DH2	1	1,639	-1	당수동 480-10임 일원	275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480-10임 일원	274	
			-3	당수동 473-2전 일원	274	
			-4	당수동 473-2전 일원	274	
			-5	당수동 473-2전 일원	274	
			-6	당수동 473-2전 일원	268	
	2	1,765	-1	당수동 480-10임 일원	113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476-3대 일원	275	
			-3	당수동 476-1전 일원	306	
			-4	당수동 476-1전 일원	255	
			-5	당수동 476-1전 일원	257	
			-6	당수동 476-2대 일원	274	
			-7	당수동 476-2대 일원	285	
	3	1,000	-1	당수동 473-1전 일원	248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473-1전 일원	250	
			-3	당수동 473-1전 일원	253	
			-4	당수동 474대 일원	249	
DH2	4	961	-1	당수동 437-5임 일원	242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437-5임 일원	242	
			-3	당수동 437-5임 일원	242	
			-4	당수동 472임 일원	235	
	5	1,557	-1	당수동 437-5임 일원	294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2	당수동 437-5임 일원	301	

블럭명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3	당수동 437-4임 일원	303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4	당수동 437-4임 일원	330	
			-5	당수동 437-19임 일원	329	
	6	1,792	-1	당수동 437-1전 일원	248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437-1전 일원	252	
			-3	당수동 437-1전 일원	246	
			-4	당수동 437-1전 일원	245	
			-5	당수동 437-1전 일원	269	
			-6	당수동 437-6대 일원	269	
			-7	당수동 437-6대 일원	263	
	7	2,843	-1	당수동 437-5임 일원	321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437-5임 일원	281	
			-3	당수동 437-6대 일원	265	
			-4	당수동 437-6대 일원	300	
			-5	당수동 437-5임 일원	301	
			-6	당수동 437-5임 일원	265	
			-7	당수동 437-5임 일원	265	
			-8	당수동 437-6대 일원	265	
			-9	당수동 437-6대 일원	290	
			-10	당수동 437-6대 일원	290	
DH3	1	204	-1	당수동 740도 일원	11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740도 일원	193	
DH4	-	10,370	-	금곡동 산62임 일원	10,370	○ 획지분할 · 합병 불허[주1)]

주1) DH4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획지별 건축이 가능한 경우 획지분할 가능

2)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345,054	-	345,054	
-	60㎡이하	A-1	36,325	당수동 388-19전 일원	36,325	행복주택 : 33,110㎡ 영구임대 : 3,215㎡
		A-2	27,993	금곡동 861답 일원	27,993	행복주택
		A-3	18,855	당수동 333답 일원	18,855	공공분양 : 12,570㎡ 행복주택 : 6,285㎡
		A-4	28,788	당수동 437-1전 일원	28,788	공공분양 : 19,192㎡ 행복주택 : 9,596㎡
		A-5	30,571	당수동 388-19전 일원	30,571	공공분양 : 20,381㎡ 행복주택 : 10,190㎡
		B-1	11,219	당수동 592전 일원	11,219	공공분양
	소 계		153,751	-	153,751	-
	60㎡ ~85㎡	B-1	14,278	당수동 592전 일원	14,278	공공분양
		C-1	31,481	당수동 484답 일원	31,481	일반분양
		C-2	20,534	금곡동 842전 일원	20,534	일반분양
		C-3	30,833	금곡동 822전 일원	30,833	일반분양
		D-1	9,001	당수동 321-1전	9,001	일반분양
		D-2	15,557	당수동 437-1전 일원	15,557	일반분양
		D-3	22,531	당수동 388-19전 일원	22,531	일반분양
	소 계		144,215	-	144,215	-
	85㎡초과	D-1	9,000	당수동 321-1전	9,000	일반분양
		D-2	15,557	당수동 437-1전 일원	15,557	일반분양
		D-3	23,639	당수동 388-19전 일원	23,639	일반분양
	소 계		47,088	-	47,088	-

주1) B-1은 60㎡이하와 60~85㎡와의 혼합형임 / D-1, D-2, D-3는 60~85㎡와 85㎡초과의 혼합형임

- 변경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312,947	-	312,947	
-	60㎡이하	A-1	36,325	당수동 388-19전 일원	36,325	행복주택 : 33,110㎡ 영구임대 : 3,215㎡
		A-2	27,993	금곡동 861답 일원	27,993	행복주택
		A-3	18,855	당수동 333답 일원	18,855	공공분양 : 12,570㎡ 행복주택 : 6,285㎡
		A-4	28,788	당수동 437-1전 일원	28,788	공공분양 : 19,192㎡ 행복주택 : 9,596㎡
		A-5	30,571	당수동 388-19전 일원	30,571	공공분양 : 20,381㎡ 행복주택 : 10,190㎡
		A-6	1,194	당수동 467-3대 일원	1,194	통합공공임대
		B-2	10,094	당수동 440전 일원	10,094	공공분양
	소 계		153,820	-	153,820	-
	60㎡ ~85㎡	B-1	19,736	당수동 437-1전 일원	19,736	공공분양
		B-2	4,326	당수동 440전 일원	4,326	공공분양
		C-1	16,706	당수동 321-1전 일원	16,706	민간임대
		C-2	15,522	당수동 484답 일원	15,522	일반분양
		C-3	30,833	금곡동 882전 일원	30,833	일반분양
		C-4	13,938	금곡동 842전 일원	13,938	일반분양
		C-5	378	당수동 690-5도 일원	378	일반분양
		D-3	22,531	당수동 388-19전 일원	22,531	일반분양
	소 계		123,970	-	123,970	-
	85㎡초과	C-2	6,652	당수동 484답 일원	6,652	일반분양
		C-4	5,974	금곡동 842전 일원	5,974	일반분양
		D-3	22,531	당수동 388-19전 일원	22,531	일반분양
	소 계		35,157	-	35,157	-

주1) B-2는 60㎡이하와 60~85㎡의 혼합형임 / C-2, C-4, D-3는 60~85㎡와 85㎡초과의 혼합형임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 기정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	10,895	-	-	10,895	
근생1	-	2,080	-1	당수동 249-15답 일원	520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당수동 330-1전 일원	520	
			-3	당수동 330-1전 일원	520	
			-4	당수동 330-2답 일원	520	
근생2	-	4,515	-1	당수동 249-1전 일원	502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당수동 249-1전 일원	502	
			-3	당수동 249-1전 일원	502	
			-4	당수동 249-1전 일원	502	
			-5	당수동 249-1전 일원	502	
			-6	당수동 249-1전 일원	502	
			-7	당수동 339-19전 일원	502	
			-8	당수동 339-19전 일원	502	
			-9	당수동 339-19전 일원	499	
근생3	-	4,300	-1	당수동 330-1전 일원	535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당수동 330-1전 일원	535	
			-3	당수동 330-1전 일원	535	
			-4	당수동 330-1전 일원	535	
			-5	당수동 330-1전 일원	535	
			-6	당수동 330-1전 일원	535	
			-7	당수동 335전 일원	535	
			-8	당수동 335전 일원	555	

- 변경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15,698	-	-	15,698	
근생1	-	562	-1	당수동 249-15답 일원	562	○ 획지분할 불허
근생2	-	4,515	-1	당수동 249-1전 일원	502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당수동 249-1전 일원	502	
			-3	당수동 249-1전 일원	502	
			-4	당수동 249-1전 일원	502	
			-5	당수동 249-1전 일원	502	
			-6	당수동 249-1전 일원	502	
			-7	당수동 339-19전 일원	502	
			-8	당수동 339-19전 일원	502	
			-9	당수동 339-19전 일원	499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근생3	-	4,300	-1	당수동 330-1전 일원	535	○ 획지분할 · 합병 불허
			-2	당수동 330-1전 일원	535	
			-3	당수동 330-1전 일원	535	
			-4	당수동 330-1전 일원	535	
			-5	당수동 330-1전 일원	535	
			-6	당수동 330-1전 일원	535	
			-7	당수동 335전 일원	535	
			-8	당수동 335전 일원	555	
근생4	-	50	-1	당수동 477-2전 일원	50	○ 획지분할 불허
근생5	-	1,669	-1	당수동 477-2전 일원	414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477-1전 일원	414	
			-3	당수동 477-1전 일원	414	
			-4	당수동 477-1전 일원	427	
근생6	-	2,074	-1	당수동 470대 일원	360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471대 일원	429	
			-3	당수동 472임 일원	428	
			-4	당수동 472임 일원	426	
			-5	당수동 437-6대 일원	431	
근생7	-	1,893	-1	당수동 439-2전 일원	373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439-2전 일원	380	
			-3	당수동 437-6대 일원	380	
			-4	당수동 437-6대 일원	380	
			-5	당수동 437-3전 일원	380	
근생8	-	635	-1	금곡동 845-4답 일원	280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금곡동 845답 일원	355	

4) 주상복합용지 (신설)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37,982	-	-	37,982	
M-1	-	11,348	-	당수동 388-19전 일원	11,348	○ 획지분할 불허
M-2	-	16,549	-	당수동 592전 일원	16,549	○ 획지분할 불허
M-3	-	10,085	-	금곡동 846답 일원	10,085	○ 획지분할 불허

5)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 (변경)

- 기정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	27,928	-	-	27,928	
상업1	-	4,018	-1	당수동 434대 일원	1,338	○ 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 획지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434대 일원	1,340	
			-3	당수동 434대 일원	1,340	
상업2	-	5,669	-1	당수동 434대 일원	1,891	○ 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 획지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388-19전 일원	1,890	
			-3	당수동 388-19전 일원	1,888	
상업3	-	6,531	-1	당수동 388-19전 일원	2,167	○ 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 획지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434대 일원	2,181	
			-3	당수동 388-19전 일원	2,183	
상업4	-	2,214	-1	당수동 388-19전 일원	2,214	○ 획지분할 불허
업무1	-	4,477	-1	당수동 388-19전 일원	1,121	○ 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 획지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388-19전 일원	1,112	
			-3	당수동 388-19전 일원	1,122	
			-4	당수동 388-19전 일원	1,122	
업무2	-	5,019	-1	당수동 388-19전 일원	2,513	○ 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 획지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388-19전 일원	2,506	

- 변경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23,221	-	-	23,221	
상업1	-	2,336	-1	당수동 434대 일원	2,336	ㅇ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ㅇ획지분할 불허 (다만,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상업2	-	4,970	-1	당수동 388-19전 일원	2,453	ㅇ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ㅇ획지분할 불허 (다만,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434대 일원	2,517	
상업3	-	6,531	-1	당수동 388-19전 일원	2,167	ㅇ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ㅇ획지분할 불허 (다만,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434대 일원	2,181	
			-3	당수동 388-19전 일원	2,183	
상업4	-	2,214	-1	당수동 388-19전 일원	2,214	ㅇ획지분할 불허
상업5	-	2,151	-1	당수동 688-1도 일원	2,151	ㅇ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ㅇ획지분할 불허 (다만,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업무2	-	5,019	-1	당수동 388-19전 일원	2,513	ㅇ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ㅇ획지분할 불허 (다만,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388-19전 일원	2,506	

6)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	53,760	-	-	53,760	
도시1	-	6,338	-1	당수동 345-5답 일원	3,124	ㅇ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ㅇ획지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388-19전 일원	3,214	
도시2	-	6,377	-1	당수동 405-6임 일원	3,210	ㅇ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ㅇ획지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405-9임 일원	3,167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도시3	-	4,339	-1	당수동 388-19전 일원	2,176	○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획지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388-19전 일원	2,163	
도시4	-	5,110	-1	당수동 405-10임 일원	5,110	○획지분할 불허
도시5	-	8,540	-1	당수동 388-19전 일원	4,270	○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획지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388-19전 일원	4,270	
도시6	-	12,332	-1	당수동 388-19전 일원	4,110	○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획지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388-19전 일원	4,111	
			-3	당수동 388-19전 일원	4,111	
도시7	-	10,724	-1	당수동 398-5전 일원	2,631	○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획지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당수동 388-19전 일원	2,689	
			-3	당수동 388-19전 일원	2,679	
			-4	당수동 388-19전 일원	2,725	

7)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신설)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4,716	-	-	4,716	
복합 커뮤니티시설	-	4,716	-	당수동 329전 일원	4,716	-

8) 주차장용지(변경)

- 기정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	5,849	-	-	5,849	
주차1	-	1,359	-	당수동 437-6대 일원	1,359	-
주차2	-	1,982	-	당수동 388-19전 일원	1,982	-
주차3	-	2,508	-	당수동 388-19전 일원	2,508	-

- 변경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	9,176	-	-	9,176	
주차1	-	1,500	-	당수동 249-15답 일원	1,500	-
주차2	-	1,982	-	당수동 388-19전 일원	1,982	-
주차3	-	2,508	-	당수동 388-19전 일원	2,508	-
주차4	-	1,500	-	당수동 437-6대 일원	1,500	-
주차5	-	1,686	-	당수동 388-19전 일원	1,686	-

9)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	4,561	-	-	4,561	
변1	-	4,561	-	당수동 393-4전 일원	4,561	-

10) 교육시설용지(변경)

- 기정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	25,541	-	-	25,541	
초1	-	12,937	-	당수동 388-19전 일원	12,937	-
중1	-	12,604	-	당수동 330-3답 일원	12,604	-

- 변경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	25,691	-	-	25,691	
초1	-	12,937	-	당수동 388-19전 일원	12,937	-
중1	-	12,754	-	당수동 330-3답 일원	12,754	-

11) 종교시설용지(변경)

- 기정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	2,679	-	-	2,679	
종1	-	1,589	-	당수동 388-19전 일원	1,589	-
종2	-	1,090	-	금곡동 112-1임 일원	1,090	무학사(존치)

- 변경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	2,673	-	-	2,673	
종1	-	1,589	-	당수동 388-19전 일원	1,589	-
종2	-	1,084	-	금곡동 112-1임 일원	1,084	무학사(존치)

10) 생태마을용지(변경)

- 기정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	23,307	-	-	23,307	
EH	-	23,307	-	금곡동 873답 일원	23,307	

- 변경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	23,242	-	-	23,242	
EH	-	23,242	-	금곡동 873답 일원	23,242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

- 기정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H1 ~ DH4	용도표시			R1 (점포겸용 주택), R2 (블록형 단독주택)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단독주택용지 내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 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 단위로 하며, 분할 및 합병할 수 없다.
	용도	허용용도	DH1 ~ DH3	•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에 의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 바목, 자목 • 단, 근린생활시설 설치 시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하여 설치 할 수 없다. •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주택의 경우 1층과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지하2층 이하는 기계실 및 주차용도에 한한다. •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DH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 • 제1종전용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사목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DH1 ~ DH3	• 60% 이하
		DH4	• 40% 이하
	용적률	DH1 ~ DH3	• 180% 이하
		DH4	• 100% 이하
	최고 층수	DH1 ~ DH3	• 4층
		DH4	• 3층
	허용 가구수	DH1 ~ DH3	• 5가구 이하
		DH4	• <별표1>에 따름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점포겸용 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층 전부를 주택으로 할 경우와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에어컨 실외기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용지의 건축물 중 정온을 요하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다’지구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제시된 이중창, 강철제 출입문, 지붕, 벽 등에 방음시설을 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0cm 이내로 전면지반과 가능한 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지붕 및 옥탑 등 – 점포겸용 주택에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1. 점포겸용 주택의 경우에는 평지붕으로 계획 할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 조성,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2. 경사지붕의 경우에는 경사구배를 최소 10분의 4 이상에서 최대 10분의 10으로 하여 다양한 도시경관을 형성하되,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인접 주택과의 경관상 조화를 고려하여 반원형의 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 4.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건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5. 계단실, 물탱크, 첨탑 등의 옥탑부 돌출을 불허한다. 6.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점포겸용 주택 지붕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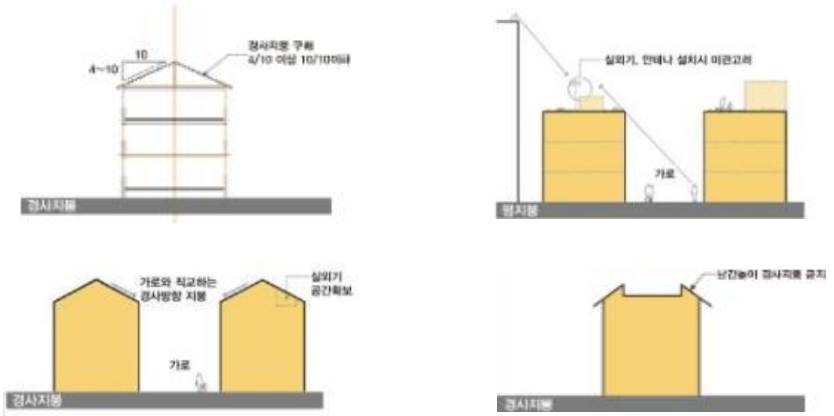 <점포겸용 주택 지붕 예시사진> • 담장, 대문, 계단 등 – 단독주택용지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담장 설치시 재료는 가로경관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다만,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 및 칠보산 경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블록형 단독주택 조성기준	• 블록형 단독주택의 조성기준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12조의7(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등), 제12조의8(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 제12조의9(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관리)의 내용을 준용한다.

<별표1>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블록번호	대지면적(㎡)	허용세대수(호)	인구수(인)	비 고
DH4	10,441	29	73	–

- 변경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H1 ~ DH3	용도표시		R1 (점포겸용 주택)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단독주택용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단,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가능하며,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수 있다.)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당구장, 노래방은 불허용도임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1층 및 지하1층에 한하여 허용하며(교육용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 불허) 건축물 연면적의 40%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에서 가능하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하며 지하2층 이하는 기계실 및 주차장 용도에 한한다. • 단독주택용지의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최고층수		• 4층
	허용 가구수		• 5가구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Ⅱ편 도시건축통합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선이 지정된 단독주택용지는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원시 건축조례」 별표3(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기단부의 경우,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높이와 차이를 1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단, 1층이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층 점포 층고 및 바닥높이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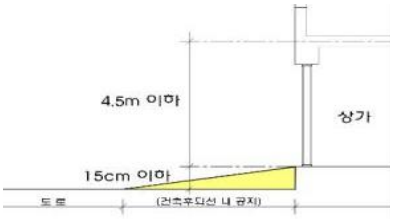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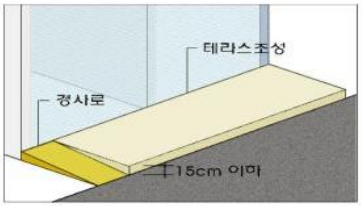 – 도로 또는 공원변에 면한 점포겸용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점포겸용 주택 건축물의 1층 전부를 주택으로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투시형 벽면 및 투시형 셔터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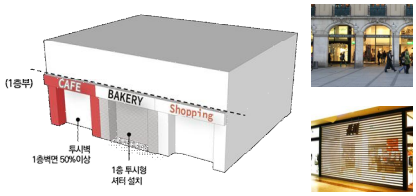 <보행자전용도로 방향 출입문 조성예시>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재료 사용을 권장하며,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건축물의 재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1. 천연자재 및 천연자재 가공품 2. 공업 생산재(현장 조립제품에 한함) 3. 상기 재료가 조합된 공업 생산제품(현장 조립제품에 한함) 4. 첨단 기술에 의해 생겨난 재료(목재, PC 콘크리트 판, 내후성 강판, 벽돌, 점토 판, 유리, 무광 금속) 5. 재료를 현장에서 가공하여 성형하는 제품을 지양할 것(예시 드라이비트, 단열자재위 뿜칠 및도색) 6. 외면에 뿜칠 등을 하여 자재가 비산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지양할 것 – 에어컨 실외기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점포겸용주택 건축물의 1층 점포 조성시,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방향으로 출입문 1개소 이상 설치 및 건축선 이격공간에 차양, 데크 설치를 권장하며, 보행 활성화를 유도하는 거리로 조성한다. – 높이 차이가 심한 개구부의 설치, 서로 조화되지 않는 형태의 개구부 배열, 난잡한 형태 요소의 남용, 기능과 무관한 장식용 창의 설치를 금한다. – 항공기 소음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용지의 건축물 중 정온을 요하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제3종 구역 '다' 지구 수준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지붕 및 옥탑 – 해당 필지의 유형에 따라 '시행지침 제Ⅱ편 도시건축통합계획 시행지침' 제3장의 건축물 유형별 조성방안에 따른 지붕 및 옥탑 조성에 대한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지붕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한다. 1. 시행지침 제Ⅱ편 제3장 수원당수 도시건축통합계획 시행지침을 따르며 · 점포겸용 단독주택지의 경우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며, 평지붕과 혼합하여 조성 가능하되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평지붕은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하며, 휴게시설, 녹지공간 또는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하여야 한다. · 평지붕 외곽에 난간 높이의 경사지붕면 및 파라펫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난간 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형식 또는 모임형식의 지붕이어야 한다. 2. 경사지붕의 경우에는 경사도는 10:3 이내로 하여(최소 10분의 3 이상에서 최대 10분의 7)으로 하여 통일성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 시 반드시 고려한다. · 경사의 방향은 가로에서 바라보았을 때 박공의 형태가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계획하고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다만, 인접 건축물과의 시각적 · 실용적(우수처리시설 등) 조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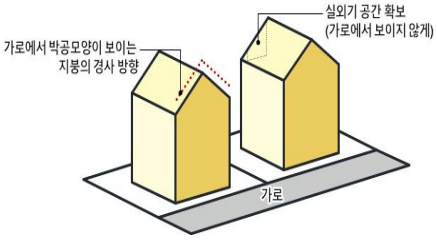 3. 계단실, 물탱크, 첨탑 등의 옥탑부 돌출을 불허한다. 4.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단독주택 지붕 조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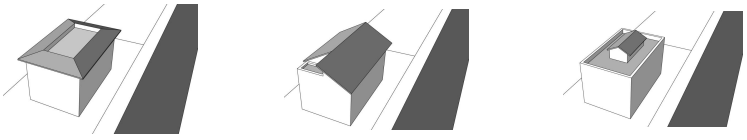 난간높이의 경사지붕 설치 금지 / 평지붕은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 /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 배치 금지 경사지붕 조성 예시 – 점포겸용 주택에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 및 친환경 도시형성에 일조한다. – 지붕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집열판 이외의 설비는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태양에너지 설비 조성 예시>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지양 사례 (X) /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권장 사례 (O) • 담장, 대문, 계단 등 – 단독주택용지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담장 설치시 재료는 가로경관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다만,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점포겸용 주택은 담장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다.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를 이루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별도의 재료를 허용한다. 1. 지반지형 여건상 식재가 불가능할 경우 2.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구조적으로 식재 설치가 어려운 경우 <생울타리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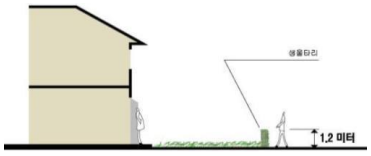 - 관리형 자족 생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단지 내 녹지공간은 저영향개발(LID:Low Imapct Development) 기법을 이용한 우수활용 시스템을 도입한다. 1. 녹지공간은 포장면(보도)보다 낮은 토공계획고를 조성하여 포장면 유출수침투를 유도한다. 2. 녹지공간의 포장면은 가능한 자연소재를 도입하고, 인공소재 사용시에는 투수성 높은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경관·색채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시행지침 제VI편 통합계획구간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DH4	용도표시	R2 (블록형 단독주택)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획지별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획지분할 가능하다.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한함)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최고층수	• 3층
	허용 가구수	• <별표1>에 따름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형태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에어컨 실외기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용지의 건축물 중 정온을 요하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제3종 구역 '다' 지구 수준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0cm 이내로 전면지반과 가능한 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담장, 대문, 계단 등 – 단독주택용지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담장 설치시 재료는 가로경관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다만,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다. –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및 칠보산 경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블록형 단독주택 조성기준	• 블록형 단독주택의 조성기준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7(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등), 제12조의8(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 제12조의9(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관리)의 내용을 준용한다.

<별표1>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블록번호	대지면적(㎡)	허용세대수(호)	인구수(인)	비 고
DH4	10,370	28	70	–

2)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table>
<tr><th>위 치
(가구번호)</th><th colspan="2">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6">A-1~A-5,
B-1,
C-1~C-3,
D-1~D-3</td><td colspan="2">용도표시</td><td>A</td></tr>
<tr><td colspan="2">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td><td>• 공동주택용지의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td></tr>
<tr><td rowspan="2">용도</td><td>허용
용도</td><td>•「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td></tr>
<tr><td>불허
용도</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td></tr>
<tr><td colspan="2">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td><td>
<table>
<tr><th>구 분</th><th>평균규모(㎡)</th><th>건폐율(%)</th><th>용적률(%)</th><th>최고층수</th></tr>
<tr><td>A-1BL</td><td>54, 45</td><td>40% 이하</td><td>215% 이하</td><td>22층 이하</td></tr>
<tr><td>A-2BL</td><td>54</td><td>40% 이하</td><td>215% 이하</td><td>21층 이하</td></tr>
<tr><td>A-3BL</td><td>80</td><td>40% 이하</td><td>170% 이하</td><td>22층 이하</td></tr>
<tr><td>A-4BL</td><td>80</td><td>40% 이하</td><td>170% 이하</td><td>20층 이하</td></tr>
<tr><td>A-5BL</td><td>80</td><td>40% 이하</td><td>190% 이하</td><td>21층 이하</td></tr>
<tr><td>B-1BL</td><td>80, 109</td><td>40% 이하</td><td>190% 이하</td><td>20층 이하</td></tr>
<tr><td>C-1BL</td><td>109</td><td>40% 이하</td><td>170% 이하</td><td>21층 이하</td></tr>
<tr><td>C-2BL</td><td>109</td><td>40% 이하</td><td>170% 이하</td><td>21층 이하</td></tr>
<tr><td>C-3BL</td><td>109</td><td>40% 이하</td><td>160% 이하</td><td>19층 이하</td></tr>
<tr><td>D-1BL</td><td>109, 140</td><td>40% 이하</td><td>170% 이하</td><td>20층 이하</td></tr>
<tr><td>D-2BL</td><td>109, 140</td><td>40% 이하</td><td>190% 이하</td><td>21층 이하</td></tr>
<tr><td>D-3BL</td><td>109, 140</td><td>40% 이하</td><td>190% 이하</td><td>23층 이하</td></tr>
</table>
</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에 주동이 걸친 경우 각각의 배치구간에 포함된 주호에 한하여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 그리고 지정된 층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연도형 배치구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직각배치구간
–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 등으로 직각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별도의 소음예측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조망차폐율 적용구간
– 조망차폐율 적용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외곽 경계 중 도로변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외곽 경계 중 보행자도로와 공공공지변,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면하는 도로변에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td></tr>
</table>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외곽 경계 중 모퉁이 변에는 결절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용도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단,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획지경계선으로부터 주거동은 최소 6m,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은 최소 3m를 이격하여야 한다. • 건축지정선 – 생활가로변으로부터의 접근성 증대와 가로환경 활성화, 정연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생활가로변에 건축지정선을 지정하여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거동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건축한계선에 따라 이격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색채	• 탑상형 아파트 – 평면상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이내가 되도록 한다. • 지붕, 옥탑 등 – 공동주택의 지붕형태는 단지 내 통일감 있는 디자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4/10 범위 내에서 조성한다. • 필로티 – 단지내 주요 보행동선을 확보하거나 휴식놀이 혹은 커뮤니티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층부에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2개층 이상 또는 유효높이 4m 이상 필로티로 하여야 한다. – 필로티의 폭은 ‘주호 1호 너비’이상이어야 한다. • 담장, 계단 – 공동주택용지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높이 1.2m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다. – 보행자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식수대를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색채, 옥외광고물 등 – 아파트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 외벽 등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용지([별표7] 수원군공항 운항경로 중첩 도면 참고)의 건축물 중 정온을 요하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다’ 지구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제시된 이중창, 강철제 출입문, 지붕, 벽 등에 방음시설을 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변경

<table>
<tr><th>위 치
(가구번호)</th><th colspan="2">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6">A-1~A-5,
C-3,
D-3</td><td colspan="2">용도표시</td><td>A</td></tr>
<tr><td colspan="2">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td><td>• 공동주택용지의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td></tr>
<tr><td rowspan="2">용도</td><td>허용
용도</td><td>•「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td></tr>
<tr><td>불허
용도</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td></tr>
<tr><td colspan="2">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td><td>
<table>
<tr><th>구 분</th><th>평균규모(㎡)</th><th>건폐율(%)</th><th>용적률(%)</th><th>최고층수</th></tr>
<tr><td>A-1BL</td><td>54, 45</td><td>40% 이하</td><td>215% 이하</td><td>22층 이하</td></tr>
<tr><td>A-2BL</td><td>54</td><td>40% 이하</td><td>215% 이하</td><td>21층 이하</td></tr>
<tr><td>A-3BL</td><td>80</td><td>40% 이하</td><td>170% 이하</td><td>22층 이하</td></tr>
<tr><td>A-4BL</td><td>80</td><td>40% 이하</td><td>170% 이하</td><td>20층 이하</td></tr>
<tr><td>A-5BL</td><td>80</td><td>40% 이하</td><td>190% 이하</td><td>21층 이하</td></tr>
<tr><td>C-3BL</td><td>109</td><td>40% 이하</td><td>160% 이하</td><td>19층 이하</td></tr>
<tr><td>D-3BL</td><td>109, 140</td><td>40% 이하</td><td>190% 이하</td><td>23층 이하</td></tr>
</table>
</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에 주동이 걸친 경우 각각의 배치 구간에 포함된 주호에 한하여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 그리고 지정된 층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연도형 배치구간 및 연도형배치구간(층수제한)의 위치와 폭, 그리고 지정된 층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보행특화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직각배치구간
-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 등으로 직각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가 별도의 소음예측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조망차폐율 적용구간
- 조망차폐율 적용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외곽 경계 중 도로변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외곽 경계 중 보행자도로와 공공공지변, 근린생활시설</td></tr>
</table>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용지와 면하는 도로변에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외곽 경계 중 모퉁이 변에는 결절점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용도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단,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획지경계선으로부터 주거동은 최소 6m,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은 최소 3m를 이격하여야 한다. • 건축지정선 – 생활가로변으로부터의 접근성 증대와 가로환경 활성화, 정연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생활가로변에 건축지정선을 지정하여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거동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건축한계선에 따라 이격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색채	• 탑상형 아파트 – 평면상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이내가 되도록 한다. • 지붕, 옥탑 등 – 공동주택의 지붕형태는 단지 내 통일감 있는 디자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4/10 범위 내에서 조성한다. • 필로티 – 단지내 주요 보행동선을 확보하거나 휴식·놀이 혹은 커뮤니티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층부에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2개층 이상 또는 유효높이 4m 이상 필로티로 하여야 한다. – 필로티의 폭은 '주호 1호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 • 담장, 계단 – 공동주택용지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높이 1.2m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다. – 보행자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식수대를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색채, 옥외광고물 등 – 아파트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 외벽 등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용지의 건축물 중 정온을 요하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제3종 구역 '다' 지구 수준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table>
<tr><th>위 치
(가구번호)</th><th colspan="2">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6">A-6,
B-1, B-2,
C-1, C-2,
C-4, C-5</td><td colspan="2">용도표시</td><td>A</td></tr>
<tr><td colspan="2">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td><td>• 공동주택용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td></tr>
<tr><td rowspan="2">용도</td><td>허용
용도</td><td>•「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외)</td></tr>
<tr><td>불허
용도</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td></tr>
<tr><td colspan="2">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td><td>
<table>
<tr><th>구 분</th><th>평균규모(㎡)</th><th>건폐율(%)</th><th>용적률(%)</th><th>최고층수</th></tr>
<tr><td>A-6BL</td><td>56</td><td>40% 이하</td><td>165% 이하</td><td>25층 이하</td></tr>
<tr><td>B-1BL</td><td>109</td><td>40% 이하</td><td>180% 이하</td><td>20층 이하</td></tr>
<tr><td>B-2BL</td><td>88, 112</td><td>40% 이하</td><td>165% 이하</td><td>25층 이하</td></tr>
<tr><td>C-1BL</td><td>109</td><td>40% 이하</td><td>150% 이하</td><td>20층 이하</td></tr>
<tr><td>C-2BL</td><td>109, 140</td><td>40% 이하</td><td>180% 이하</td><td>20층 이하</td></tr>
<tr><td>C-4BL</td><td>109, 140</td><td>40% 이하</td><td>190% 이하</td><td>25층 이하</td></tr>
<tr><td>C-5BL</td><td>112</td><td>40% 이하</td><td>175% 이하</td><td>25층 이하</td></tr>
</table>
• 도시 및 마을 단위의 자연스럽고 점증적인 스카이라인 형성, 주요 자연경관으로의 통경축 확보, 주요 결절점의 랜드마크 형성 등을 위해 최고높이를 지정하며 건축물의 배치구간에 따른 높이제한의 위치와 폭원은 ‘제Ⅱ편 제3장 수원당수 도시건축통합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칠보산에 면한 생태보존형(Ⅰ권역)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칠보산에서부터 연결되는 물길의 지하수위 저하를 고려하여 지하층을 최소화하고 저층배치를 권장한다.</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9조 ①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단, 주거용도에 한하여 적용하며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미터 이상으로 완화한다.
• 건축지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지정선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9조 ②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일반사항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에 대한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연도형 배치구간(층수제한)에 관한 사항
– 연도형 배치구간(층수제한)의 위치와 폭, 지정된 층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0조 ⑥항 제2호’, ‘도시건축통합계획 시행지침 건축물 유형분류 및 조성방안의 CODE❷ 투과형’ 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연도형 배치구간(층수제한) 예시도> • 층수제한구간에 관한 사항 –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 지정된 층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0조 ④항’, ‘도시건축통합계획 시행지침 건축물 유형분류 및 조성방안의 CODE❸ 클러스터형 및 ❼ 클러스터형 + 고층탑상형’ 기준을 따른다. <층수제한구간 예시도> • 능선형 배치구간에 관한 사항 – 능선형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 지정된 층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0조 ⑥항 제3호’, ‘도시건축통합계획 시행지침 건축물 유형분류 및 조성방안의 CODE❶ 능선형, CODE❻ 능선형+저층탑상형’ 기준을 따른다. <능선형 배치구간 예시도> • 탑상형배치 허용구간에 관한 사항 – 칠보산에 면한 저밀 주거단지의 경우 저층의 탑상형 배치를 허용하여 주요 녹지축에서 열린 경관을 형성한다. – 타워형배치 허용구간의 위치와 폭, 층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조성방법은 ‘도시건축통합계획 시행지침 건축물 유형분류 및 조성방안의 CODE❹ 저층탑상형’ 기준을 따른다. • 보행특화 배치구간에 관한 사항 – 휴먼스케일의 가로경관형성과 보행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행특화 배치구간을 지정하고,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보행특화 배치구간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0조 제⑥항 제6호’의 규정을 따른다.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보행특화 배치구간 및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배치 예시> • 주거용시설 불허구간에 관한 사항 –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항공기 소음영향도 70WECPNL을 초과한 지역에 부대복리시설의 배치를 권장하고 주거용 시설의 배치를 불허하는 구간을 지정하고,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주거용 시설 불허구간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0조 제⑥항 제11호’의 규정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색채	• 입면 및 외관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형태, 외관등에 관한 사항은 ‘제Ⅱ편 도시건축통합계획 시행지침 제15조 건축물 유형분류 및 조성방안’을 따르며 제Ⅱ편 시행지침 외 공통사항 등은 ‘제Ⅳ편 통합계획구간 용지별 시행지침’을 따른다.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건축물은 동일 주거동 내에서 다양한 입면(돌출입면, 오픈발코니 등), 측벽특화 등 입체적 변화를 통해 건축물 디자인 특화를 구상한다. – 주거동의 입면 및 외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주거동의 입면은 시각적 위화감을 저감하고, 양호한 도시경관이 형설 될 수 있도록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구상한다. 2. 건축물 외관의 연속성 및 통일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실외기는 발코니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 – 다양한 입면계획을 유도하기 위하여 발코니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발코니의 형태 및 색채 등의 변화를 통해 입면의 다양화 도모 2. 발코니의 형태는 돌출, 함입, 측벽, 외부개방 등 다양한 유형 활용 3. 측벽의 경우, 발코니를 몇 개층 단위로 계획하여 측벽의 다양한 입면 구성 4. 축물의 경관을 고려 측벽 및 입면 발코니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가급적 지양 – 주요 가로변이나 공원·녹지, 학교 변에 주거동의 측벽이 연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측벽을 특화하여 창문, 개구부, 발코니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 대응 및 이격거리 확보 등으로 인해 측벽에 창호 및 개구부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에는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나 벽면의 요철, 그래픽 디자인 등을 통해 측벽을 특화하며 장식이나 과도한 그래픽 디자인은 지양한다. <입면 및 외벽 특화 예시>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 접지층 세대특화에 관한 사항 – 저층세대 계획시 사생활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녹지 및 시각적 차폐시설, 필로티 등의 계획적 요소를 적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접지층 세대특화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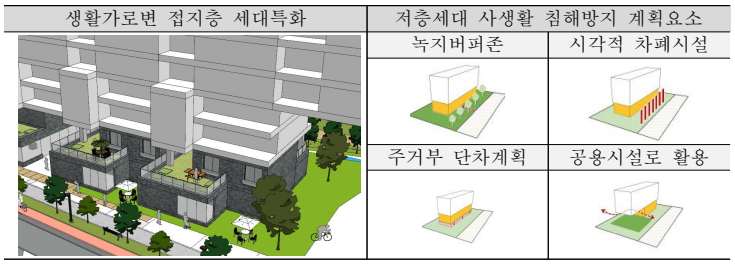

• 필로티 구조에 관한 사항

– 생활가로 및 문화공원가로에 연접하여 주거동을 배치할 경우 통로부분은 ‘필로티구조’를 설치 할 수 있으며, 필로티를 계획할 경우 설치기준은 ‘제Ⅱ편 도시건축통합계획 시행지침의 제3장 제15조의 건축물 유형별 시행지침’의 건축물 형태 및 높이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필로티 공간 조성 예시(쉼터, 풋살장)>

• 담장, 계단 등에 관한 사항

– 개방감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용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어 보행자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나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인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높이 1.2 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 공원, 녹지와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문화공원가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접한 보행공간과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간 커뮤니티형성을 위하여 담장설치를 불허한다.

• 지붕, 옥탑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건축물의 지붕(옥탑부 포함)형태는 단지 내 통일감 있는 디자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 옥탑부에는 입주민의 자연경관 조망 및 쉼터공간 활용을 위한 옥상 녹화(조경), 파고라 등 설치 및 단지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도입한다.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붕 및 옥탑 예시> 옥탑외벽 특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 설치) 최상층 특화 (경관 조망 – 스카이라운지 도입) 최상층 특화 (커뮤니티시설 도입) •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건축물 외벽 또는 공중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관의 연속성 및 통일성 미관등을 고려하여 실외기는 발코니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 (단, 행복주택의 경우 주택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Ⅵ편 통합계획구간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Ⅵ편 통합계획구간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 쓰레기적치장 및 분리수거장의 설치 – 쓰레기집적소는 외관 디자인 및 자재를 결정시 해당 단지와의 조화 및 미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행자 동선 및 일반차량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차폐 및 분리하여 설치하고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쓰레기집적소는 수거차량이 진입하여 옮겨 실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쓰레기발생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거시설 및 쓰레기 배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거된 쓰레기를 외부 공간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집적소 내에 별도의 쓰레기 적재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하층에 쓰레기적치장 및 분리수거장 설치시 발생하는 악취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탈취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 기정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근생1 ~ 근생3	용도표시		SR
	용도	허용용도	•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게임제공업소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및 색채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근린생활시설 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에어컨실외기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층 바닥의 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0cm 이내로 전면지반과 가능한 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지붕형태, 옥탑 등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담장, 계단 – 담장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 및 칠보산 경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 변경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근생2, 근생3	용도표시		SR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게임제공업소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및 색채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근린생활시설 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에어컨실외기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층 바닥의 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0cm 이내로 전면지반과 가능한 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지붕형태, 옥탑 등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담장, 계단 – 담장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 및 칠보산 경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근생1, 근생4 ~ 근생8	용도표시		SR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게임제공업소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Ⅱ편 도시건축통합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선이 지정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9조(건축선의 용어에 관한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수원시 건축조

		례」 별표3(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색채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기단부의 경우,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높이와 차이를 1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1층 점포 층고 및 바닥높이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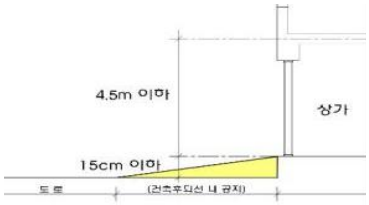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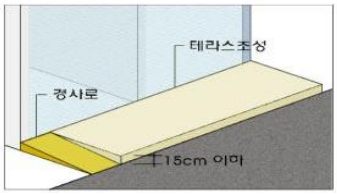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을 후퇴 후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한다. • 외벽의 재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투시형 벽면 및 투시형 셔터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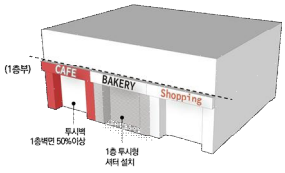 <보행자전용도로 방향 출입문 조성예시>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0조 제⑥항 제9호 아케이드 설치구간’의 규정을 따르며, 아케이드 설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지붕 및 옥탑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 실외기 및 부수장치,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을 허용한다. – 건축물의 지붕은 평지붕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하고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은 설치할 수 없다.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 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인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1.5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담장은 투시형, 친환경 자연재료 등을 사용한다.
	경관·색채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시행지침 제Ⅵ편 통합계획구간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4) 주상복합용지(신설)

<table>
<tr><th>위 치
(가구번호)</th><th colspan="2">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6">M-1
~
M-3</td><td colspan="2">용도표시</td><td>M1</td></tr>
<tr><td colspan="2">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td><td>• 모든 획지는 본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 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td></tr>
<tr><td rowspan="2">용도</td><td>허용
용도</td><td>•「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아파트에 한함)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 제6호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상점에 한하며,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 제9호 의료시설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에 한함)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주거용도는 지상층 연면적의 90% 미만으로 계획하고 주거용도 외 용도는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td></tr>
<tr><td>불허
용도</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td></tr>
<tr><td colspan="2">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td><td>
<table>
<tr><th>구 분</th><th>평균규모(㎡)</th><th>건폐율(%)</th><th>용적률(%)</th><th>최고층수</th></tr>
<tr><td>M-1BL</td><td>109, 140</td><td>70% 이하</td><td>220% 이하
(주거 197)</td><td>25층 이하</td></tr>
<tr><td>M-2BL</td><td>109, 140</td><td>70% 이하</td><td>220% 이하
(주거 197)</td><td>25층 이하</td></tr>
<tr><td>M-3BL</td><td>109, 140</td><td>70% 이하</td><td>220% 이하
(주거 197)</td><td>25층 이하</td></tr>
</table>
</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건축한계선
– 주상복합용지의 건축한계선 지정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주상복합용지의 단지외곽 경계 중 도로변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행차량 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2. 주상복합용지의 단지외곽 경계 중 보행자도로와 공공공지변,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면하는 도로변에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3. 주상복합용지의 단지외곽 경계 중 모퉁이 변에는 결절점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9조 ①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일반사항
– 주상복합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에 대한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상업·업무기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주거용도와 비주거용도를 수직적으로 분리하여 건축하여야 한다.</td></tr>
</table>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형태 및 외관, 색채	• 입면 및 외관에 관한 사항 – 주상복합용지의 탑상형 주거동은 당수1 · 2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식재를 이용한 생태친화적 입면디자인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적용을 권장한다. – 평면상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 이내가 되도록 한다. • 필로티 구조에 관한 사항 – 단지내 주요 보행동선을 확보하거나 휴식 · 놀이 혹은 커뮤니티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층부에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2개층 이상 또는 유효높이 4m 이상 필로티로 하여야 한다. – 필로티의 폭은 ‘주호 1호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 • 담장, 계단 등에 관한 사항 – 개방감 확보를 위해 주상복합용지 외곽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인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높이 1.2 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 공원, 녹지 및 보행자도로변 등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 주상복합용지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건축물 외벽 또는 공중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Ⅵ편 통합계획구간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Ⅵ편 통합계획구간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5)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변경)

- 기정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1~4 업무1~2	용도표시			C1 (상업), D1 (업무)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획지의 기본단위로 하며, 획지는 인접한 획지와 합병할 경우만 가능하고 분할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용도	허용용도	상업1~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 제6호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에 의한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업무 1~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주택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촬영소 제외) ※ 일반업무시설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50% 이상으로 한다.
		불허용도	상업 1~4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업무 1~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600%이하
	높이			• 최고층수 10층 이하 • 최저층수 6층 이상 • 구체적인 층수규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기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기된 바에 따라 건축하되,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관계법규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전면방향 - 건축물 전면 방향은 주요 간선도로, 보행자도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 한다. • 건축선의 지정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건물 1층의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단차가 10cm 이하로 하되 대지가 도로에 접한 경우는 도로경계석으로부터 1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형태 및 색채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2.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3.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경시설 조성을 권장한다. -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한다. - 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보행로 주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행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의 식재 등으로 충분히 차폐될 수 있도록 하며 환기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구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행자보다 높이 설치한다. 2.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한다. 3.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환기구 설치 예시도> 별도의 디자인 계획 | 보행로에서 이격하여 수목으로 차폐 • 층고 – 너비 20m이상의 도로변 건축물의 1층 층고는 이웃 획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1층 층고의 높이를 일치시키도록 하며 경사지 등 부득이한 경우와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담장 –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 변경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3, 상업4 업무2	용도표시			C1 (상업), D1 (업무)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획지의 기본단위로 하며, 획지는 인접한 획지와 합병할 경우만 가능하고 분할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용도	허용용도	상업 3, 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 제6호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에 의한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업무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주택 제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촬영소 제외) ※ 일반업무시설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50% 이상으로 한다.
		불허용도	상업 3, 4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업무 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600%이하
	높이			• 최고층수 10층 이하 • 최저층수 6층 이상 • 구체적인 층수규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기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기된 바에 따라 건축하되,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관계법규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전면방향 - 건축물 전면 방향은 주요 간선도로, 보행자도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 한다. • 건축선의 지정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건물 1층의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단차가 10cm 이하로 하되 대지가 도로에 접한 경우는 도로경계석으로부터 1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형태 및 색채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2.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3.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경시설 조성을 권장한다. -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한다. - 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보행로 주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행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의 식재 등으로 충분히 차폐될 수 있도록 하며 환기구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행자보다 높이 설치한다. 2.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한다. 3.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table>
<tr><th>위 치
(가구번호)</th><th colspan="2">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3"></td><td colspan="2" rowspan="3"></td><td>< 환기구 설치 예시도></td></tr>
<tr><td>
별도의 디자인 계획</td><td>

보행로에서 이격하여 수목으로 차폐</td></tr>
<tr><td>• 층고
– 너비 20m이상의 도로변 건축물의 1층 층고는 이웃 획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1층 층고의 높이를 일치시키도록 하며 경사지 등 부득이한 경우와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담장
–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td></tr>
<tr><td rowspan="9">상업1,
상업2,
상업5</td><td colspan="2">용도표시</td><td>C1 (상업)</td></tr>
<tr><td colspan="2">획지의 분할과 합병</td><td>•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획지의 기본단위로 하며, 획지는 인접한 획지와 합병할 경우만 가능하고 분할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td></tr>
<tr><td rowspan="2">용도</td><td>허용
용도</td><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 제6호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에 의한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 제24호 방송통신시설</td></tr>
<tr><td>불허
용도</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td></tr>
<tr><td rowspan="2">건폐율</td><td>상업1,
상업2</td><td>• 80%이하</td></tr>
<tr><td>상업5</td><td>• 80%이하</td></tr>
<tr><td rowspan="2">용적률</td><td>상업1,
상업2</td><td>• 450%이하</td></tr>
<tr><td>상업5</td><td>• 600%이하</td></tr>
<tr><td>높이</td><td>상업1,
상업2</td><td>• 최고층수 8층 이하
• 최저층수 4층 이상</td></tr>
</table>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5	• 최고층수 10층 이하 • 최저층수 6층 이상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 등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수원시 건축조례」 별표 3(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 건축물 전면 방향은 주요 간선도로, 보행자도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 한다.
	형태 및 외관 등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단차가 15cm 이하로 하되 대지가 도로에 접한 경우는 도로경계석으로부터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1층 층고는 4m 이상으로 조성한다. –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투과형 유리 예시도〉 –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다양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층부(3층 이상), 저층부(지상 1~2층)로 구분하여 수평적인 입면을 구성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건축물 외관의 연속성 및 통일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실외기는 발코니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 – 건축물 외벽면에 냉난방 실외기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서 설치 가능하다. – 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보행로 주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행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의 식재 등으로 충분히 차폐될 수 있도록 하며 환기구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행자보다 높이 설치한다. 2.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한다. 3.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환기구 설치 예시도〉 • 지붕형태, 옥상 등 – 건축물의 지붕은 평지붕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옥상녹화로 조성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부대설비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에어컨 실외기,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및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용 안테나 제외) – 지붕 · 옥상층에 의해 형성된 상부 공간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파고라 등)을 조성하여 이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조성 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옥상층 부대설비),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은 불허한다. • 담장 등 – 상업시설용지 내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1.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0.8미터 이하의 화목류의 생울타리 및 자연재료 또는 0.4미터 이하의 앉음벽 등의 휴게시설로 설치한다. 2.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 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 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산책로 등의 보행공간을 치하고 보도 및 주변 보행공간으로 출입이 자유롭게 조성하여야 한다. 벤치, 앉음벽,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차장, 설비시설,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등은 설치할 수 없다. •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색채는 지역중심지로서의 상징성 구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Ⅵ편 제6장(야간경관 계획)' 의 기준을 따른다. – 간판에 네온, 전광, 점멸 등을 이용한 적정조명은 규제하고 외부조명 또는 간접조명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을 한다. – 1개업소에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하며, 곡가지점에 위치한 1~3층 입주업소는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중1개를 추가 설치 가능하다. – 옥외광고물 일반사항 및 광고물 종류별 설치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수원시 조례」를 따라야 하며 당해 규정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 강화된 규정을 따른다.

6) 기타시설용지 (변경)

- 기정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도시1 ~ 도시7	용도표시		Z1	
	획지의 분할과 합병		• 인접한 획지와 합병은 가능하고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만 해당) 할 수 있다.	
	용도	허용용도	주용도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산업집적기반시설,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table>
<tr><th>위 치
(가구번호)</th><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내용</th></tr>
<tr><td rowspan="9"></td><td rowspan="2"></td><td></td><td>부용도</td><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 · 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상인 것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1층에 한하여 허용한다.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td></tr>
<tr><td></td><td>불허용도</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70% 이하</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400% 이하</td></tr>
<tr><td colspan="2">높이(층)</td><td>• 최고층수 : 8층 이하
• 최저층수 : 4층 이상</td></tr>
<tr><td colspan="2">건축한계선</td><td>•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td></tr>
<tr><td colspan="2">전면공지</td><td>•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td></tr>
<tr><td colspan="2">형태 및 외관</td><td>•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td></tr>
<tr><td rowspan="3">주차1
~
주차3</td><td colspan="2">용도표시</td><td>P1</td></tr>
<tr><td colspan="2">획지의 분할과 합병</td><td>•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td></tr>
<tr><td colspan="2">허용용도</td><td>•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건축물 (단, 주차전용건축물 외의 용도는 ‘주차전용건축물 외 기타시설 종류’에 따른다.)</td></tr>
</table>

<table>
<tr><th>위 치
(가구번호)</th><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 rowspan="8"></td><td></td><td>
〈 주차전용건축물 외 기타시설 종류 〉
<table>
<tr><th>블럭명</th><th>주차전용건축물 외 도입 가능시설</th><th>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th></tr>
<tr><td>주차1
(제1종
일반주거지역)</td><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 제6호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td><td>70%이상</td></tr>
<tr><td>주차2
(일반
상업지역)</td><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폐차장 제외)</td><td>70%이상</td></tr>
<tr><td>주차3
(준주거지역)</td><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재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폐차장 제외)</td><td>70%이상</td></tr>
</table>
</td></tr>
<tr><td>불허용도</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td></tr>
<tr><td>건폐율</td><td><table><tr><td>주차1</td><td>주차2</td><td>주차3</td></tr><tr><td>90% 이하</td><td>90% 이하</td><td>90% 이하</td></tr></table></td></tr>
<tr><td>용적률</td><td><table><tr><td>주차1</td><td>주차2</td><td>주차3</td></tr><tr><td>250% 이하</td><td>600% 이하</td><td>400% 이하</td></tr></table></td></tr>
<tr><td>높이(층)</td><td><table><tr><td>주차1</td><td>주차2</td><td>주차3</td></tr><tr><td>5층 이하</td><td>10층 이하</td><td>8층 이하</td></tr></table></td></tr>
<tr><td>건축선</td><td>•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td></tr>
<tr><td>형태 및 외관</td><td>•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td></tr>
<tr><td rowspan="4">변1</td><td>용도표시</td><td>Z2</td></tr>
<tr><td>획지의 분할과 합병</td><td>•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td></tr>
<tr><td>허용용도</td><td>•「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및 부속용도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td></tr>
<tr><td>불허용도</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able>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제한없음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전기관련시설의 고압 송전선로는 지중화방식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 전기관련시설 부지내 변전시설의 경우 충전부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관의 외부노출이 되지 않도록 차폐조경 및 녹음수 식재 등을 시행한다.
초1	용도표시	S1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에 의한 초등학교 • 「초 · 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교사동은 가급적 각 도로로부터 직각 또는 평행으로 배치하되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배치하고 운동장은 운동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도로변 방음벽은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방음벽의 재질과 형태를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 생활가로에 접한 부분의 획지경계구분은 높이 1.2m 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조성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용지의 건축물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다’지구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제시된 이중창, 강철제 출입문, 지붕, 벽 등에 방음시설을 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중1	용도표시	S2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에 의한 중학교 • 「초 · 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교사동은 가급적 각 도로로부터 직각 또는 평행으로 배치하되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배치하고 운동장은 운동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도로변 방음벽은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방음벽의 재질과 형태를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 생활가로에 접한 부분의 획지경계구분은 높이 1.2m 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조성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용지의 건축물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다’지구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제시된 이중창, 강철제 출입문, 지붕, 벽 등에 방음시설을 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이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 1~2	용도표시		G1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가목과 가목의 부속용도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용도	종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종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종1	• 60% 이하
		종2	• 20% 이하
	용적률	종1	• 250% 이하
		종2	• 100% 이하
	높이 (층)	종1	• 5층 이하 (첨탑의 높이를 포함하여 지표면으로부터 30m를 넘을 수 없다.)
		종2	• 2층 이하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용지의 건축물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다’ 지구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제시된 이중창, 강철제 출입문, 지붕, 벽 등에 방음시설을 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 종2(무학사)는 존치시설로서 존치되는 동안에는 존치결정 당시 설치된 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며, 신축 및 개축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를 적용한다.
EH	용도표시		QR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 • 제1종전용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사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최고층수		• 3층
	형태 및 외관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생태마을 용지의 건축물 중 정온을 요하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다’ 지구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제시된 이중창, 강철제 출입문, 지붕, 벽 등에 방음시설을 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변경

<table>
<tr><th>위 치
(가구번호)</th><th colspan="3">구분</th><th colspan="2">계획내용</th></tr>
<tr><td rowspan="10">도시1
~
도시7</td><td colspan="3">용도표시</td><td colspan="2">Z1</td></tr>
<tr><td colspan="3">획지의 분할과 합병</td><td colspan="2">• 인접한 획지와 합병은 가능하고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만 해당) 할 수 있다.</td></tr>
<tr><td rowspan="3">용도</td><td rowspan="2">허용용도</td><td>주용도</td><td colspan="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산업집적기반시설,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td></tr>
<tr><td>부용도</td><td colspan="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 · 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상인 것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1층에 한하여 허용한다.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td></tr>
<tr><td colspan="2">불허용도</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td></tr>
<tr><td colspan="3">건폐율</td><td colspan="2">• 70% 이하</td></tr>
<tr><td colspan="3">용적률</td><td colspan="2">• 400% 이하</td></tr>
<tr><td colspan="3">높이(층)</td><td colspan="2">• 최고층수 : 8층 이하
• 최저층수 : 4층 이상</td></tr>
<tr><td colspan="3">건축한계선</td><td colspan="2">•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td></tr>
<tr><td colspan="3">전면공지</td><td colspan="2">•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td></tr>
</table>

<table>
<tr><th>위 치
(가구번호)</th><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td><td>형태 및 외관</td><td>•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td></tr>
<tr><td rowspan="9">주2, 주3</td><td>용도표시</td><td>P1</td></tr>
<tr><td>획지의 분할과 합병</td><td>•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td></tr>
<tr><td>허용용도</td><td>•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건축물 (단, 주차전용건축물 외의 용도는 ‘주차전용건축물 외 기타시설 종류’에 따른다.)
〈 주차전용건축물 외 기타시설 종류 〉
<table>
<tr><th>블럭명</th><th>주차전용건축물 외 도입 가능시설</th><th>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th></tr>
<tr><td>주2
(일반 상업지역)</td><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폐차장 제외)</td><td>70%이상</td></tr>
<tr><td>주3
(준주거지역)</td><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재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폐차장 제외)</td><td>70%이상</td></tr>
</table></td></tr>
<tr><td>불허용도</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td></tr>
<tr><td>건폐율</td><td><table><tr><td>주2</td><td>주3</td></tr><tr><td>90% 이하</td><td>90% 이하</td></tr></table></td></tr>
<tr><td>용적률</td><td><table><tr><td>주2</td><td>주3</td></tr><tr><td>400% 이하</td><td>400% 이하</td></tr></table></td></tr>
<tr><td>높이(층)</td><td><table><tr><td>주2</td><td>주3</td></tr><tr><td>8층 이하</td><td>8층 이하</td></tr></table></td></tr>
<tr><td>건축선</td><td>•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td></tr>
<tr><td>형태 및 외관</td><td>•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table>
<tr><th>위 치
(가구번호)</th><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6">주1, 주4,
주5</td><td>용도표시</td><td>P1</td></tr>
<tr><td>획지의 분할과 합병</td><td>•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td></tr>
<tr><td>허용용도</td><td>•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건축물 (단, 주차전용건축물 외의 용도는 ‘주차전용건축물 외 기타시설 종류’에 따른다.)
〈 주차전용건축물 외 기타시설 종류 〉
<table>
<tr><th>블럭명</th><th>주차전용건축물 외 도입 가능시설</th><th>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th></tr>
<tr><td>주1
(제2종
일반주거지역)</td><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자동차정비공장, 폐차장 제외)</td><td>70%이상</td></tr>
<tr><td>주4
(제2종
일반주거지역)</td><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자동차정비공장, 폐차장 제외)</td><td>70%이상</td></tr>
<tr><td>주5
(일반
상업지역)</td><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폐차장 제외)</td><td>70%이상</td></tr>
</table></td></tr>
<tr><td>불허용도</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td></tr>
<tr><td>건폐율</td><td><table><tr><td>주1</td><td>주4</td><td>주5</td></tr><tr><td>90% 이하</td><td>90% 이하</td><td>90% 이하</td></tr></table></td></tr>
<tr><td>용적률</td><td><table><tr><td>주1</td><td>주4</td><td>주5</td></tr><tr><td>250% 이하</td><td>250% 이하</td><td>400% 이하</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위 치
(가구번호)</th><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 rowspan="3"></td><td>높이(층)</td><td><table><tr><th>주1</th><th>주4</th><th>주5</th></tr><tr><td>5층 이하</td><td>5층 이하</td><td>8층 이하</td></tr></table></td></tr>
<tr><td>배치 및 건축선</td><td>•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수원시 건축조례」 별표 3(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td></tr>
<tr><td>형태 및 외관</td><td>•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m 이상으로 조성한다.
• 주차장 용지의 사인시설 및 차폐패널은 다음을 따른다.
– 사인(Sign) 시설
1. (형태) 패널형(기본) 또는 코너형(모서리에 부착하는 경우)
2. (색채) 오렌지색, 회색(공공디자인 기본색상), 백색
3. (종류) 주차건물사인, 방향유도사인, 진출입사인, 시설안내사인
〈사인(sign) 시설 예시도〉

〈주차건물사인(패널형·코너형)〉

〈진출입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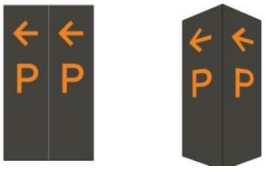

〈방향유도사인〉

〈시설안내사인〉
– 차폐패널 시설
1. 형태) 환기가 가능한 갤러리형 패널
– 가로형, 세로형, 사선형 패턴 중 선택 적용
2. (색채/재료) 회색(각 도시별 공공디자인 기본색상) / 강재 · 알루미늄
3. (배치) 최상층 2개 층 이상, 도로와 접하는 입면에 적용
– 지차제의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서 별로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지상부분은 환기 및 자연채광을 활용할 수 있는 투과형 입면재료를 활용한다.
–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조성한다.
– 건축물의 지붕은 평지붕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한다.
〈주차전용건축물 통합디자인 적용 예시도〉

</td></tr>
<tr><td rowspan="2">변1</td><td>용도표시</td><td>Z2</td></tr>
<tr><td>획지의 분할과</td><td>•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td></tr>
</table>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합병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및 부속용도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제한없음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전기관련시설의 고압 송전선로는 지중화방식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 전기관련시설 부지내 변전시설의 경우 충전부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관의 외부노출이 되지 않도록 차폐조경 및 녹음수 식재 등을 시행한다.
초1	용도표시	S1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에 의한 초등학교 • 「초 · 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교사동은 가급적 각 도로로부터 직각 또는 평행으로 배치하되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배치하고 운동장은 운동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도로변 방음벽은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방음벽의 재질과 형태를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 생활가로에 접한 부분의 획지경계구분은 높이 1.2m 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조성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용지의 건축물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제3종 구역 '다' 지구 수준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중1	용도표시	S2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에 의한 중학교 • 「초 · 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원시 건축조례」 별표 3(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 교사동은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하고, 운동장은 인근 공원과 연계 배치하여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학생과 주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옥외 체육시설, 생활 SOC시설 등은 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의 배치를 구상한다.
	형태 및 외관	•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여 주차장으로 계획한 경우에는 용적률 및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수원시 건축조례」에 따른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기단부의 경우,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 건축물의 경관(야간경관 포함), 색채, 옥외광고물(간판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Ⅵ편 통합계획구간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기준을 따른다. • 개구부의 경우, 난잡한 형태요소의 남용이나 기능과 무관한 장식용 창의 설치를 금한다.
	경관·색채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시행지침 제Ⅵ편 통합계획구간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복합커뮤니티 시설	용도표시	MS1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에 한함)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도서관에 한함)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서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조·판매시설에 한함) ※ 부용도의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10% 미만으로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원시 건축조례」 별표 3(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 교사동은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하고, 운동장은 인근 공원과 연계 배치하여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학생과 주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옥외 체육시설, 생활 SOC시설 등은 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의 배치를 구상한다.
	형태 및 외관	•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여 주차장으로 계획한 경우에는 용적률 및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수원시 건축조례」에 따른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기단부의 경우,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 건축물의 경관(야간경관 포함), 색채, 옥외광고물(간판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Ⅵ편 통합계획구간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기준을 따른다. • 개구부의 경우, 난잡한 형태요소의 남용이나 기능과 무관한 장식용 창의 설치를 금한다.
	경관·색채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시행지침 제Ⅵ편 통합계획구간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종 1~2	용도표시		G1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6호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에 한함)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용도	종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종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종1	• 60% 이하
		종2	• 20% 이하
	용적률	종1	• 250% 이하
		종2	• 100% 이하
	높이 (층)	종1	• 5층 이하 (첨탑의 높이를 포함하여 지표면으로부터 30m를 넘을 수 없다.)
		종2	• 2층 이하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용지의 건축물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제3종 구역 '다' 지구 수준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 종2(무학사)는 존치시설로서 재축, 대수선, 증축, 개축,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따르며, 신축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를 적용한다.
EH	용도표시		QR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한함)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최고층수	• 3층
	형태 및 외관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생태마을 용지의 건축물 중 정온을 요하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제3종 구역 '다' 지구 수준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남향에는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하고 그 외 지붕면은 경량형 지붕녹화를 권장한다. 단, 커뮤니티센터는 지붕녹화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1++등급 이상으로 한다. • 에너지자립률은 80%이상으로 한다. • 샤워열을 회수하여 온수에너지를 절약하는 샤워열회수장치 설치를 의무화 한다. • 건축물의 재료는 주요 건축부재 4종 이상에서 총 9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EPD)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유해물질 저감자재(자재의 생산, 폐기 시에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한 자재를 뜻하며, 환경표지(인증사유 : 유해물질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인증자재를 포함한 운영 기관의 장이 정한 자재를 뜻함)를 25개 이상 사용을 의무화 한다. • 건축 시 저탄소자재(공정·연료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자재의 전생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이전보다 저감시킨 자재) 사용, 자원순환자재(자재의 생산에 있어서 순환자원을 활용하거나, 폐기에 있어서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말하며, 이는 환경표지(인증사유: 자원순환성 향상), GR인증 제품을 포함한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자재가 있음) 사용, 녹색건축자재(환경성선언 제품, 저탄소자재, 자원순환자재, 유해물질저감자재를 말하며, 녹색건축자재 적용 비율을 산정을 위한 자재의 비용은 구매 가격, 물가자료 또는 내역석의 단가를 적용함) 사용을 의무화 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편입면적(㎡)	비 고
계	104	467,818	
전	32	372,151	
답	11	942	
대지	2	26,880	
임야	16	25,944	
도로	27	31,769	
하천	1	94	
구거	14	7,036	
유지	1	3,002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430,068.0	429,610	-
도 로	172,832.0	173,631.0	61개 노선 (보행자도로 면적포함)
공 원	223,336.0	232,281.0	소공원 1개소, 근린 2개소, 문화 1개소, 수변 1개소(유수지18 중복결정 10,934㎡)
녹 지	14,434.0	6,147.0	4개소(완충2, 경관1, 연결1)
공 공 공 지	6,357.0	3,881.0	5개소
하 천	13,109.0	13,670.0	소하천(당수천), 도로 중복(1,010㎡) 제외
유 수 지	-	-	1개소(수변공원105 내 중복결정)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기정) 김 현 준 → (변경) 이 한 준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수원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없음)

구분		전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기도	수원시	평택시
계	필지수	104	16	28	14	2	3	40	1
	면적(㎡)	467,818	7,264	421,074	7,036	1,385	4,180	26,556	323
전	필지수	32	-	19	-	-	1	12	-
	면적(㎡)	372,151	-	367,220	-	-	4,066	865	-

임야	필지수	16	–	5	–	2	2	6	1
	면적(㎡)	25,944	–	23,748	–	1,385	114	374	323
대지	필지수	2	–	2	–	–	–	–	–
	면적(㎡)	26,880	–	26,880	–	–	–	–	–
도로	필지수	27	15	1	–	–	–	11	–
	면적(㎡)	31,769	7,170	224	–	–	–	24,375	–
구거	필지수	14	–	–	14	–	–	–	–
	면적(㎡)	7,036	–	–	7,036	–	–	–	–
답	필지수	11	–	–	–	–	–	11	–
	면적(㎡)	942	–	–	–	–	–	942	–
유지	필지수	1	–	1	–	–	–	–	–
	면적(㎡)	3,002	–	3,002	–	–	–	–	–
하천	필지수	1	1	–	–	–	–	–	–
	면적(㎡)	94	94	–	–	–	–	–	–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 로(변경)

유 별		합 계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0	61	10,009	9,686	172,832	173,631
일 반 도 로	소계	40	40	8,893	8,524	164,716	165,074
	대로	2	5	1,893	2,712	40,448	61,489
	중로	22	23	5,572	4,938	111,436	96,253
	소로	16	12	1,428	874	12,832	7,332
보행자 도 로	소계	20	21	1,116	1,162	8,116	8,557
	중로	2	2	31	34	466	524
	소로	18	19	1,085	1,128	7,650	8,033

주) 가감속차로, 가각 및 하천중복(1,010㎡) 등 포함

2) 공 원(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4개소	223,336	
		변경		5개소	232,281	
생활권 공 원	소공원	기정	소계	–	–	
		변경		1개소	8,166	
		신설	1	당수동 322-1전 일원	8,166	
	근린 공원	기정	소계	3개소	198,455	
		변경		2개소	186,122	
		폐지	1	당수동 322-1전 일원	10,243	
		기정	2	당수동 480-8임 일원	38,807	
		변경			36,714	
		기정	3	금곡동 산62임 일원	149,405	
		변경			149,408	
주 제 공 원	수변 공원	기정	소계	1개소	24,881	
		변경		1개소	29,252	
		기정	1	당수동 592전 일원	24,881	저류지 중복결정 (10,934㎡)
		변경			29,252	
	문화 공원	기정	소계	–	–	
		변경		1개소	8,741	
		신설	1	당수동 520-4전 일원	8,741	

3) 녹　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11개소	14,434	
	변경		4개소	6,147	
완충녹지	기정	소계	7개소	8,524	
	변경		2개소	2,113	
	기정	1	당수동 301-2전 일원	703	
	변경		당수동 249-16전 일원	817	
	폐지	2	당수동 249-15답 일원	705	
	기정	3	당수동 337-11전 일원	1,296	
	폐지	4	당수동 468-3전 일원	2,002	
	폐지	5	당수동 446-6전 일원	2,371	
	폐지	6	당수동 437-6대 일원	632	
	폐지	7	당수동 336-3도 일원	815	
경관녹지	기정	소계	4개소	5,910	
	변경		1개소	3,430	
	폐지	1	당수동 336-3도 일원	1,029	
	폐지	2	금곡동 845-4답 일원	1,174	
	폐지	3	당수동 688-1도 일원	277	
	기정	4	당수동 398-2전 일원	3,430	
연결녹지	기정	소계	-	-	
	변경		1개소	604	
	신설	1	당수동 692전 일원	604	

4) 공공공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8개소	6,357	
	변경		5개소	3,881	
공공공지	기정	1	당수동 437-19임 일원	1,087	
	기정	2	당수동 388-19전 일원	608	
	폐지	3	당수동 388-19전 일원	474	
	폐지	4	당수동 592전 일원	864	
	기정	5	당수동 592전 일원	924	
	기정	6	금곡동 856전 일원	1,012	
	변경			642	
	기정	7	금곡동 857전 일원	620	
	폐지	8	금곡동 851-1임 일원	768	

5) 하　천(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1개소	13,109	
	변경			13,670	
하천	기정	1	당수동 727-32구 일원	13,109	도로 중복 (1,010㎡) 제외
	변경			13,670	

6)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10,934	
유수지	18	당수동 388-19전 일원	10,934	수변공원105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편입면적(㎡)	비 고
계	104	467,818	
전	32	372,151	
답	11	942	
대지	2	26,880	
임야	16	25,944	
도로	27	31,769	
하천	1	94	
구거	14	7,036	
유지	1	3,002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1) 전 :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로 이용
2) 임 야 :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로 이용
3) 대 지 :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로 이용
4) 도 로 :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로 이용
5) 구 거 :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로 이용
6) 답 :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로 이용
7) 유수지 :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로 이용
8) 하 천 :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430,068	429,610	-
도 로	172,832	173,631	61개 노선 (보행자도로 면적포함)
공 원	223,336	232,281	소공원 1개소, 근린 2개소, 문화 1개소, 수변 1개소(유수지18 중복결정 10,934㎡)
녹 지	14,434	6,147	4개소(완충2, 경관1, 연결1)
공 공 공 지	6,357	3,881	5개소
하 천	13,109	13,670	소하천(당수천), 도로 중복(1,010㎡) 제외
유 수 지	-	-	1개소(수변공원105 내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로 이용

2) 공　원 : 지구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하　천 : 기존 당수천의 선형을 지구계획에 적합하게 반영하여,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5) 유수지 : 지구 개발 후 우수처리구역을 감안하여 홍수재해를 방지 및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붙임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기정	변경							
1	기정	권선구 금곡동	112-1	임	4,312	4,312	4,312	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47, 1동 802호(구운동, 삼환아파트)	152.5385/9785				
								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27 아파트 522-1105	2748/9785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4길 21, 103동 301호(도곡동, 도곡3차아이파크)	1890/9785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058-1	1744/9785				
								이**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200-20	1405.14/9785				
								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412	1336.86/9785				
								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62(정자동)	101.6923/9785				
								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13, 108동 1102호(인계동,신반포아파트)	101.6923/9785	삼성카드주식회사	서욱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태평로2가)(수원콜렉션지점)	압류	
								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46번길 13-4, 3층동 (병방동)	101.6923/9785				
								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1051번길 37-7 (송죽동)	101.6923/9785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16, 112동 1505호 (신계동,용산이편한세상)	101.6923/9785				
2	기정	권선구 금곡동	112-3	전	464	464	464	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412					
3	기정	권선구 금곡동	112-20	전	8	8	8	수**						
4	기정	권선구 금곡동	112-26	임	143	143	143	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47, 1동 802호(구운동, 삼환아파트)	152.5385/9785				
								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13, 108동 1102호(인계동,신반포아파트)	101.6923/9785				
								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1051번길 37-7 (송죽동)	101.6923/9785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16, 112동 1505호 (신계동,용산이편한세상)	101.6923/9785				
								수원시		9327.3846/9785				
5	기정	권선구 금곡동	112-8	전	32	32	32	수원시						
6	기정	권선구 금곡동	115	임	3,648	3,648	3,648	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60 우방파크타운 104-806					
7	기정	권선구 금곡동	115-17	임	64	64	64	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60 우방파크타운 104-806					
8	기정	권선구 금곡동	115-20	임	103	103	103	경기도						
9	기정	권선구 금곡동	115-18	임	11	11	11	경기도						
10	기정	권선구 금곡동	115-3	임	47	47	47	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60 우방파크타운 104-806					
11	기정	권선구 금곡동	409-1	전	737	737	737	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530 엘지빌리지아파트 309-603					
12	기정	권선구 금곡동	411	전	21	21	21	이**	서울 강동구 암사동 442-1 율산아파트 3동 305호					
13	기정	권선구 금곡동	412-2	임	9,317	9,317	9,317	이**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4-17					
14	기정	권선구 금곡동	412-3	전	1,550	1,550	1,550	이**	서울 강동구 암사동 442-1 율산아파트 3동 305호	994/1294				
								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412	300/1294				
15	기정	권선구 금곡동	413	창	263	263	263	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73번길 33, 301동 1601호(금곡동, 엘지빌리지아파트)		수원농업협동조합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0-9 (칠보지점)	근저당권	
16	기정	권선구 금곡동	413-1	임	3,462	3,462	3,462	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73번길 33, 301동 1601호(금곡동, 엘지빌리지아파트)		수원농업협동조합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 (교동) (칠보지점)	근저당권	
17	기정	권선구 금곡동	413-5	도	66	66	66	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73번길 33, 301동 1601호(금곡동, 엘지빌리지아파트)		수원농업협동조합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 (교동) (칠보지점)	근저당권	
18	기정	권선구 금곡동	413-6	전	1,272	1,272	1,272	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73번길 33, 301동 1601호(금곡동, 엘지빌리지아파트)		수원농업협동조합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 (교동) (칠보지점)	근저당권	
19	기정	권선구 금곡동	416	전	1	1	1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0	기정	권선구 금곡동	417	임	766	766	766	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31번길 51-20, 103동 1206호(당수동, 서수원1차쌍용스윗닷홈)	1/2				
								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9,101동 1504호(태평동, 경원대역 쌍용스윗닷홈아파트)	1/2				
21	기정	권선구 금곡동	418-1	임	4,300	4,300	4,300	이**	화성군 매송면 금곡리 7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6)					
22	기정	권선구 금곡동	418-2	임	3	3	3	미등기						
23	기정	권선구 금곡동	420-1	임	2,078	2,078	2,078	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530 엘지빌리지아파트 306-1503					
24	기정	권선구 금곡동	801-137	도	624	624	624	국(건설부)						
25	기정	권선구 금곡동	801-112	도	67	67	67	국(건설부)						
26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1	전	2,879	2,879	2,879	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520 엘지빌리지아파트 404-1904		수원농업협동조합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0-9 (봉담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27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1-1	답	85	85	85	수원시						
28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1-4	창	200	200	200	이**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398					
29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1-6	도	4,640	4,640	4,640	수원시						
30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2	전	2,964	2,964	2,964	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1060번길 11-16(송죽동)					
31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2-3	전	18	18	18	수원시						
32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2-4	전	563	563	563	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 119번길		수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근저당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기정	변경							
									108(당수동)			매산로 134 (교동) (칠보지점)		
33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2-5	전	10	10	10	수원시						
34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2-6	전	11	11	11	이**	수원시 금곡동 429					
35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2-8	전	364	364	364	수원시						
36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3	전	298	298	298	허**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70-27					
37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3-1	전	69	69	69	수원시						
38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3-2	전	251	251	251	수원시						
39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4	전	3,615	3,615	3,615	이**	수원시 금곡동 429					
40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4-2	전	1,090	1,090	1,090	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 119번길 108(당수동)		수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 (교동) (칠보지점)	근저당권	
41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4-3	전	1,653	1,653	1,653	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54번길 77-10, 202호(곡반정동)		수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교동) (칠보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42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5	답	1,917	1,917	1,917	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453-22 한미스타빌라 202	3/7				
								정**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453-22 한미스타빌라 202	2/7				
								정**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453-22 한미스타빌라 202	2/7				
43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5-1	답	8	8	8	수원시						
44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5-2	답	7	7	7	수원시						
45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5-3	답	6	6	6	수원시						
46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5-4	답	325	325	325	수원시						
47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6	답	3,164	3,164	3,164	이**	수원시 금곡동 429					
48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7	전	1,094	1,094	1,094	이**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397-8					
49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7-3	임	1,838	1,838	1,838	이**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398	1/2				
								이**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397-8	1/2				
50	기정	권선구 금곡동	847-5	임	33	33	33	수원시						
51	기정	권선구 금곡동	850	전	4,093	4,093	4,093	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648 엘지빌리지아파트 102-1001					
52	기정	권선구 금곡동	851	전	1,478	1,478	1,478	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2-8	3/9				
								박**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15-58	2/9				
								박**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695-1	2/9				
								박**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아크로빌 비-3105	2/9				
53	기정	권선구 금곡동	851-1	임	30,156	30,156	30,156	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2-8	3/9				
								박**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15-58	2/9				
								박**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695-1	2/9				
								박**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아크로빌 비-3105	2/9				
54	기정	권선구 금곡동	851-2	임	22,225	22,225	22,225	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2-8	3/9				
								박**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15-58	2/9				
								박**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695-1	2/9				
								박**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아크로빌 비-3105	2/9				
55	기정	권선구 금곡동	851-4	임	19	19	1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56	기정	권선구 금곡동	852	답	2,565	2,565	2,565	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62-10 신미주아파트 1동 809호	1/4	경주이씨익제공파금곡동중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361	가처분	
								이**	화성군 매송면 금곡리 429	1/4				
								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5-6	1/4	경주이씨익제공파금곡동중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361	가처분	
								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129 302호	1/4	경주이씨익제공파금곡동중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361	가처분	
57	기정	권선구 금곡동	853	답	2,549	2,549	2,549	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31번길 7, 101동 1602호(금곡동,엘지빌리지아파트)					
58	기정	권선구 금곡동	854	답	2,549	2,549	2,549	이**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360-2					
59	기정	권선구 금곡동	855	전	1,544	1,544	1,544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4번길 126(호매실동)		수원농업협동조합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0-9 (칠보지점)	근저당권	
60	기정	권선구 금곡동	856	전	1,795	1,795	1,795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4번길 126(호매실동)		수원농업협동조합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0-9 (칠보지점)	근저당권	
61	기정	권선구 금곡동	857	전	4,949	4,949	4,949	김**	시흥군 의왕면 삼리 471-74	3/10				
								이**	시흥군 의왕면 삼리 471-74	3/10				
								이**	시흥군 의왕면 삼리 471-74	2/10				
								이**	시흥군 의왕면 삼리 471-74	2/10				
62	기정	권선구 금곡동	858	답	826	826	826	김**	경기도 안성시 혜산로 37-24, 102동 1306호(승인동, 동신아파트)		반월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37(건건동)	근저당권	
63	기정	권선구 금곡동	858-1	답	826	826	826	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35번길 60, 102동 1705호(구운동, 청구아파트)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9(인계동) (서둔동지점)	근저당권	
64	기정	권선구 금곡동	858-2	답	1,065	1,065	1,065	최**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306-40, 214동 1502호(고암동, 주원마을)		반월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37(건건동) (본오지점)	근저당권	
65	기정	권선구 금곡동	859	답	1,931	1,931	1,931	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35-11		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09-10,202호	근저당권	
66	기정	권선구 금곡동	860	전	3,841	3,841	3,841	최**	수원시 영화동 363-6					
67	기정	권선구 금곡동	861	답	8,764	8,764	8,764	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50번길 34(가능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의정부역지점)	근저당권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의정부역지점)	근저당권	
68	기정	권선구 금곡동	862	전	1,065	1,065	1,065	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45, 206동 1004호(금곡동, 엘지빌리지아파트)					
69	기정	권선구 금곡동	862-1	전	1,322	1,322	1,322	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99-2(정자동)	1/2				
								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99-2(정자동)	1/2				
70	기정	권선구 금곡동	863	답	3,458	3,458	3,458	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84-11 2층					
71	기정	권선구 금곡동	864	답	3,388	3,388	3,388	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6 현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기정	변경							
									힐스테이트아파트 112-1701					
72	기정	권선구 금곡동	865	답	1,685	1,685	1,685	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1로 95, 1306동 1001호		수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교동)	근저당권	
73	기정	권선구 금곡동	865-1	답	1,684	1,684	1,684	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내리길 122, 에이동 201호					
74	기정	권선구 금곡동	866	답	1,289	1,289	1,289	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79번길 21-1(매탄동)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신매탄지점)	근저당권	
75	기정	권선구 금곡동	867	답	1,312	1,312	1,312	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62(매탄동)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신매탄지점)	근저당권	
76	기정	권선구 금곡동	868	답	2,261	2,261	2,261	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2번길 24, 203호(의정부동, 한솔빌라)		양주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5(의정부동)(창동역)	근저당권	
77	기정	권선구 금곡동	869	답	6,165	6,165	6,165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48번길 58-22(금곡동)					
78	기정	권선구 금곡동	870	답	4,516	4,516	4,516	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73, 102동 1202호(곡반정동, 삼성아파트)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수원지점)	근저당권	
79	기정	권선구 금곡동	871	답	3,081	3,081	3,081	이**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신리 143-4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서수원지점, 서둔동지점)	근저당권	
80	기정	권선구 금곡동	872	답	1,547	1,547	1,547	이**	안양시 평촌동 93-6					
81	기정	권선구 금곡동	873	답	7,296	7,296	7,296	이**	안양시 평촌동 93-6					
82	기정	권선구 금곡동	874	전	1,983	1,983	1,983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34-3	600/1010				
								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38-26 형우빌라 나-비01	260/1010				
								최**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 430, 1308동 604호(수청동, 물향기마을휴먼시아 꿈에그린아파트)	150/1010				
83	기정	권선구 금곡동	874-1	전	1,356	1,356	1,356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34-3	600/1010				
								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38-26 형우빌라 나-비01	260/1010	수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교동)(칠보지점)	근저당권	
								최**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 430, 1308동 604호(수청동, 물향기마을휴먼시아 꿈에그린아파트)	150/1010				
84	기정	권선구 금곡동	875	임	3,960	3,960	3,960	양**	수원시 정자동 18-12					
85	기정	권선구 금곡동	876	답	331	331	331	이**	화성군 매송면 금곡리 429	1/3				
								이**	화성군 매곡면 금곡리 429	1/3				
								이**	화성군 매곡면 금곡리 422	1/3				
86	기정	권선구 금곡동	877	임	4,245	4,245	4,245	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66 강남아파트 103-1702					
87	기정	권선구 금곡동	877-1	임	323	323	323	평택시						
88	기정	권선구 금곡동	878	전	432	432	432	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66 강남아파트 101-1404					
89	기정	권선구 금곡동	879	전	897	897	897	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66 강남아파트 101-1404					
90	기정	권선구 금곡동	880	전	2,734	2,734	2,734	용**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607, 107동 403호(금곡동, 강남아파트)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607,109동 702호 (금곡동, 강남아파트)	근저당권	
91	기정	권선구 금곡동	881	전	4,066	4,066	4,066	경기도						
92	기정	권선구 금곡동	882	전	7,726	7,726	7,726	문**	수원시 구운동 117					
93	기정	권선구 금곡동	883	전	1,345	1,345	1,345	이**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001 대광파인밸리 101-1501	1/2				
								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890 엘디코오롱아파트 105-1503	1/2				
94	기정	권선구 금곡동	884	전	6,426	6,426	6,426	문**	수원시 구운동 117					
95	기정	권선구 금곡동	885	전	5,554	5,554	5,554	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3 신안아파트 106-702	1/2				
								장**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516 신안아파트 106동 702호	1/2				
96	기정	권선구 금곡동	886	전	13,927	13,927	13,927	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35, 108동 401호(반포동, 반포리체)	1/2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35, 108동 401호(반포동, 반포리체)	1/2				
97	기정	권선구 금곡동	888	전	3,342	3,342	3,342	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26-8					
98	기정	권선구 금곡동	888-1	전	1,676	1,676	1,676	박**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82-5 삼익2차아파트 201-1003		수원농업협동조합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0-9 (칠보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99	기정	권선구 금곡동	889	전	2,266	2,266	2,266	박**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37-11					
100	기정	권선구 금곡동	890	전	2,266	2,266	2,266	이**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18-1 삼정아파트 207-1704		반월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36-6		
101	기정	권선구 금곡동	891	전	3,389	3,389	3,389	권**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42-29 신라궁전타운 5-302호	1/3				
								권**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 주공아파트 440동 304호	1/3				
								권**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70 화남아파트 109호	1/3				
102	기정	권선구 금곡동	892	답	548	548	548	권**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42-29 신라궁전타운 5-302호	1/3				
								권**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 주공아파트 440동 304호	1/3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기정	변경							
								권**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70 화남아파트 109호	1/3				
103	기정	권선구 금곡동	893	대	810	810	810	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9-9		수원농업협동조합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0-9	근저당권, 지상권	
104	기정	권선구 금곡동	894	전	962	962	962	김**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10-22 성우주택 201호					
105	기정	권선구 금곡동	895	전	3,289	3,289	3,289	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309-3					
106	기정	권선구 금곡동	896	전	1,150	1,150	1,150	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309-3					
107	기정	권선구 금곡동	896-1	전	1,240	1,240	1,240	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산로 17(고색동)					
108	기정	권선구 금곡동	897	전	265	265	265	백**	서울 종로구 서린동 97					
109	기정	권선구 금곡동	903	임	1,789	1,789	1,789	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67 벽산한성아파트 807-1101					
110	기정	권선구 금곡동	928	전	466	466	466	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66 강남아파트 101-1404					
111	기정	권선구 금곡동	930	전	86	86	86	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 59-5(연무동)	1/2				
								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86-3	1/2				
112	기정	권선구 금곡동	931	답	3	3	3	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 59-5(연무동)	1/2				
								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86-3	1/2				
113	기정	권선구 금곡동	947	전	223	223	223	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18-1 삼정아파트 201-801	1/3	청주한씨여임(휘사중)손종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12번길 33-2, 305호(탑동, 일신주택)	가처분	
								한**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 26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61)	1/3				
								한**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 28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81)	1/3				
114	기정	권선구 금곡동	1052-9	도	347	347	347	국(국토교통부)						
115	기정	권선구 금곡동	산61	임	793	793	793	국(산림청)						
116	기정	권선구 금곡동	산62	임	24,694	24,694	24,694	백**	서울 종로구 서린동 97					
117	기정	권선구 금곡동	산63	임	496	496	496	김**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10-22 성우주택 201호					
118	기정	권선구 금곡동	산64	임	8,550	8,550	8,550	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61-13					
119	기정	권선구 금곡동	산69	임	14,264	14,264	14,264	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5, 247동 203호(잠실동, 리센츠)	1/2				
								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숲속로 36, 882동 2602호(능동, 동탄숲속마을 모아미래도아파트)	1/2				
120	기정	권선구 당수동	249-1	전	4,498	4,498	4,498	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743 한라비발디아파트1단지 105-1003		송파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75(마천동)	근저당	
121	기정	권선구 당수동	249-15	답	3,676	3,676	3,676	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35 권선에스케이뷰 213-603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정자동 지점)	근저당	
122	기정	권선구 당수동	249-16	전	2,000	2,000	2,000	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18-1 삼정아파트 101-1807		수원농업협동조합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0-9	근저당, 지상권	
123	기정	권선구 당수동	249-17	전	2,456	2,456	2,456	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26, 3106동 1001호(중동,성산마을서해그랑블)		수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	근저당	
124	기정	권선구 당수동	249-14	전	218	218	218	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37, 208동 2104호(평촌동,초원아파트)	1/3				
								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2, 402호(광장동,한산코스모스텔)	1/3				
								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211번길 14-24, 402호(세류동)	1/3				
125	기정	권선구 당수동	299-3	답	1,041	1,041	1,041	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55 주공뉴타운아파트 104-1701		수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0-9	근저당	
126	기정	권선구 당수동	300-3	전	701	701	701	한**	수원시 권선동 1267 벽산한성아파트 811-202					
127	기정	권선구 당수동	301-2	전	1,181	1,181	1,181	한**	수원시 고등동 225-49, 62 우경빌라 에이-402	1/3				
								한**	시흥시 대야동 563 서해아파트 101-1205	1/3				
								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8-6 초원아파트 304-401	1/3				
128	기정	권선구 당수동	302-3	전	938	938	938	윤**	경기도 화성시 남여울3길 25, 301호(능동)		수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	근저당	
129	기정	권선구 당수동	317-1	전	902	902	902	김**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08-4					
130	기정	권선구 당수동	318-1	답	422	422	422	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60 우방파크타운 103-1207					
131	기정	권선구 당수동	319-1	전	1,703	1,703	1,703	이**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31 비단마을현대성우 우방아파트 714-1002		박**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 동현아파트 1-1107	근저당	
132	기정	권선구 당수동	319-2	전	1,749	1,749	1,749	이**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31 비단마을현대성우 우방아파트 714-1002		박**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 동현아파트 1-1107	근저당	
133	기정	권선구 당수동	320	전	1,422	1,422	1,422	이**	수원시 북수동 995					
134	기정	권선구 당수동	321-1	전	1,455	1,455	1,455	이**	수원시 북수동 295					
135	기정	권선구 당수동	321-3	임	1,360	1,360	1,360	이**	수원시 북수동 295					
136	기정	권선구 당수동	322-1	전	11,511	11,511	11,511	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032-2					
137	기정	권선구 당수동	322-5	전	427	427	427	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청솔마을 에스케이, 한화아파트 626-104					
138	기정	권선구 당수동	322-6	임	839	839	839	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032-2					
139	기정	권선구 당수동	322-4	대	294	294	294	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032-2					
140	기정	권선구 당수동	323-3	전	671	671	671	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12길 38-5 (상동)		반월농업협동조합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36-6	근저당,지상권	
141	기정	권선구 당수동	323-4	전	790	790	790	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26-9 태양하이츠빌 에이-401		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67 성원아파트 107-2201	근저당	
142	기정	권선구 당수동	323-5	전	1,405	1,405	1,405	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청솔마을 에스케이,한화아파트 626-104					
143	기정	권선구 당수동	324	전	1,283	1,283	1,283	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745 서수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기정	변경							
									원1차쌍용스윗당홈 104-1206					
144	기정	권선구 당수동	325	답	4,813	4,813	4,813	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25번길 17, 나동 302호(영화동,정진그린맨션)		수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	근저당	
145	기정	권선구 당수동	326	답	5,365	5,365	5,365	강**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377 엘지삼익아파트 107-506		박**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 동현아파트 1-1107	근저당	
											김**	대전 서구 도마동 113-1	근저당	
											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40 우성아파트 11-902	근저당	
											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 328 흑석동양아파트 102-702	근저당	
											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43 남해오네뜨아파트 101-701	근저당	
											이**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 84-19 향린빌라 에이-201	근저당	
											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377 엘지삼익아파트 101-407	근저당	
146	기정	권선구 당수동	327	답	2,684	2,684	2,684	석**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 288-12					
147	기정	권선구 당수동	328	전	2,096	2,096	2,096	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수원 한일타운아파트 133동 1901호		수원농업협동조합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0-9	근저당, 지상권	
148	기정	권선구 당수동	329	전	1,111	1,111	1,111	이**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59					
149	기정	권선구 당수동	330-1	전	5,987	5,987	5,987	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82 신촌마을포스홈타운 210-203	1/5				
								한**	오산시 부산동 718	1/5				
								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742 한라비발디아파트2단지 205-501	1/5				
								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8-2 살구골동아아파트 714-1202	1/5				
								한**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18-1 삼정아파트 207-401	1/5				
150	기정	권선구 당수동	330-2	답	4,185	4,185	4,185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4번길 126(호매실동)	2644.64/4185	서신농업협동조합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707	근저당, 지상권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4번길 126(호매실동)	1540.36/4185				
151	기정	권선구 당수동	330-3	답	3,623	3,623	3,623	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7-5 동남메리트아파트 수정마을 103-1304					
152	기정	권선구 당수동	331	답	1,124	1,124	1,124	한**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 261					
153	기정	권선구 당수동	332	전	2,003	2,003	2,003	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41 삼익1차아파트 101-1707					
154	기정	권선구 당수동	333	답	2,909	2,909	2,909	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81-21					
155	기정	권선구 당수동	335	전	3,451	3,451	3,451	국(기획재정부)						
156	기정	권선구 당수동	336-1	전	2,579	2,579	2,579	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35					
157	기정	권선구 당수동	336-2	답	443	443	443	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742 한라비발디아파트 2단지 205-501					
158	기정	권선구 당수동	336-3	도	16,002	16,002	16,002	수원시						
159	기정	권선구 당수동	337-10	전	637	637	637	배**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650 화서주공아파트 411-1601	1/2				
								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955-1 황골마을주공아파트 131-1904	1/2				
160	기정	권선구 당수동	337-11	전	3,073	3,073	3,073	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880번길 19, 801호(구운동)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4(등촌동)(화곡역지점)	근저당권	
161	기정	권선구 당수동	337-7	답	541	541	541	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225번길 15(마두동)	1/2				
								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46, 106동 1402호(인계동, 레미안노블레스)	1/2				
162	기정	권선구 당수동	339-18	전	467	467	467	이**	경기도 의왕시 손골길 13(내손동)		의왕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28(내손지점)	근저당	
163	기정	권선구 당수동	339-19	전	1,740	1,740	1,740	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19번길 14-40(당수동)		수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	근저당	
164	기정	권선구 당수동	344-5	답	26	26	26	수원시						
165	기정	권선구 당수동	344-6	답	155	155	155	수원시						
166	기정	권선구 당수동	345-5	답	3,487	3,487	3,487	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 611동 701호(사동, 안산고잔6차푸르지오)	1/2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본점)	근저당권	
								송**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 611동 701호(사동, 안산고잔6차푸르지오)	1/2				
167	기정	권선구 당수동	345-3	답	330	330	330	안**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 394번길 28-13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본점)	근저당권	
168	기정	권선구 당수동	345-4	답	244	244	244	안**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 394번길 28-13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본점)	근저당권	
169	기정	권선구 당수동	347	전	949	949	949	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18-1 삼정아파트 202-904					
170	기정	권선구 당수동	347-1	전	17	17	17	정**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 167					
171	기정	권선구 당수동	347-3	전	73	73	73	수원시						
172	기정	권선구 당수동	363-4	유	3,002	3,002	3,002	국(기획재정부)						
173	기정	권선구 당수동	363-45	답	243	243	243	이**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405					
174	기정	권선구 당수동	377	천	94	94	94	국(국토해양부)						
175	기정	권선구 당수동	379	답	179	179	179	박**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398					
176	기정	권선구 당수동	388-19	전	251,527	251,527	251,527	국(기획재정부)						
177	기정	권선구 당수동	388-1	전	45	45	45	국(기획재정부)						
178	기정	권선구 당수동	388-3	전	58	58	58	국(기획재정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기정	변경							
179	기정	권선구 당수동	393-4	전	3,617	3,617	3,617	이**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12		국(처분청-수원세무서),수원시,수원시권선구,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종로구 연지동 136-74 (중부신용지원단)	가압류	
											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83, 13동 1302호(비산동, 뉴타운아파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안양농업협동조합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9,10	근저당권, 지상권	
											이**	서울 강남구 도곡로13길 19, 101동 1301호(역삼동, 역삼동롯데캐슬노블)	근저당권	
180	기정	권선구 당수동	397-1	전	248	248	248	국(기획재정부)						
181	기정	권선구 당수동	397-3	전	139	139	139	국(기획재정부)						
182	기정	권선구 당수동	397-7	전	136	136	136	국(기획재정부)						
183	기정	권선구 당수동	398-2	전	1,286	1,286	1,286	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212번길 22(서둔동)		수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교동) (구운지점)	근저당권	
184	기정	권선구 당수동	398-5	전	2,698	2,698	2,698	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76, 6117동1601호(이의동,광교이편한세상아파트)		수원농업협동조합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0-9	근저당권, 지상권	
185	기정	권선구 당수동	398-15	전	13	13	13	이**	수원시 매산로2가 53					
186	기정	권선구 당수동	399-3	전	76	76	76	국(기획재정부)						
187	기정	권선구 당수동	399-4	전	46	46	46	국(기획재정부)						
188	기정	권선구 당수동	403-5	전	137	137	137	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719(당수동)		국 (처분청-수원세무서), 수원시 권선구		압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종로구 연지동 136-74 (중부신용지원단)	가압류	
											안양농업협동조합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9,10	근저당권, 지상권	
											이**	서울 강남구 도곡로13길 19, 101동 1301호(역삼동, 역삼동롯데캐슬노블)	근저당권	
189	기정	권선구 당수동	405-1	전	780	780	780	정**	서울 용산구 갈월동 8-26					
190	기정	권선구 당수동	405-9	임	1,689	1,689	1,689	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0, 502동 1102호(평촌동, 꿈마을아파트)	5/10	반월신용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32-23	근저당권, 지상권	
								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5, 에이동 88호(안양동, 비와이씨 안양 비스타 오피스텔)	4/10				
								오**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119, 725동 402호(산본동, 솔거아파트)	1/10				
191	기정	권선구 당수동	405-10	임	5,759	5,759	5,759	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0, 502동 1102호(평촌동, 꿈마을아파트)	5/10	반월신용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32-23	근저당권, 지상권	
								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5, 에이동 88호(안양동, 비와이씨 안양 비스타 오피스텔)	4/10				
								오**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119, 725동 402호(산본동, 솔거아파트)	1/10				
192	기정	권선구 당수동	405-11	임	5	5	5	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0, 502동 1102호(평촌동, 꿈마을아파트)	5/10	반월신용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32-23	근저당권, 지상권	
								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5, 에이동 88호(안양동, 비와이씨 안양 비스타 오피스텔)	4/10				
								오**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119, 725동 402호(산본동, 솔거아파트)	1/10				
193	기정	권선구 당수동	405-6	임	6,612	6,612	6,612	정**	서울 용산구 갈월동 8-26					
194	기정	권선구 당수동	405-7	전	1,179	1,179	1,179	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0, 502동 1102호(평촌동, 꿈마을아파트)	5/10	반월신용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32-23	근저당권, 지상권	
								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5, 에이동 88호(안양동, 비와이씨 안양 비스타 오피스텔)	4/10				
								오**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119, 725동 402호(산본동, 솔거아파트)	1/10				
195	기정	권선구 당수동	405-12	전	1,766	1,766	1,766	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0, 502동 1102호(평촌동, 꿈마을아파트)	5/10	반월신용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32-23	근저당권, 지상권	
								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5, 에이동 88호(안양동, 비와이씨 안양 비스타 오피스텔)	4/10				
								오**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119, 725동 402호(산본동, 솔거아파트)	1/10				
196	기정	권선구 당수동	406-1	전	1,408	1,408	1,408	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719(당수동)		국 (처분청-수원세무서), 수원시 권선구		압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종로구 연지동 136-74 (중부신용지원단)	가압류	
											안양농업협동조합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9,10	근저당권, 지상권	
											이**	서울 강남구 도곡로13길 19, 101동 1301호(역삼동, 역삼동롯데캐슬노블)	근저당권	
197	기정	권선구 당수동	406-4	전	483	483	483	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0, 502동 1102호(평촌동, 꿈마을아파트)	5/10				
								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5, 에이동 88호(안양동, 비와이씨 안양 비스타 오피스텔)	4/10				
								오**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119, 725동 402호(산본동, 솔거아파트)	1/10				
198	기정	권선구 당수동	406-5	전	460	460	460	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0, 502동 1102호(평촌동, 꿈마을아파트)	5/10				
								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5, 에이동 88호(안양동, 비와이씨 안양 비스타 오피스텔)	4/10				
								오**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119, 725동 402호(산본동, 솔거아파트)	1/10				
199	기정	권선구 당수동	412-14	임	258	258	258	국(기획재정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기정	변경							
200	기정	권선구 당수동	412-15	전	218	218	218	국(기획재정부)						
201	기정	권선구 당수동	412-17	임	592	592	592	국(산림청)						
202	기정	권선구 당수동	412-19	전	119	119	119	국(기획재정부)						
203	기정	권선구 당수동	434	대	19,674	19,674	19,674	국(기획재정부)						
204	기정	권선구 당수동	437-1	전	47,525	47,525	47,525	국(기획재정부)						
205	기정	권선구 당수동	437-2	전	2,134	2,134	2,134	국(기획재정부)						
206	기정	권선구 당수동	437-3	전	125	125	125	국(기획재정부)						
207	기정	권선구 당수동	437-4	임	575	575	575	조**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12-314					
208	기정	권선구 당수동	437-5	임	3,260	3,260	3,260	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99, 5동 201호 (조원동, 우석빌라)	331/3260				
								송**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71-1 아주아파트 다-209	2929/3260	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67 성원아파트 104-1606	일부 가처분	
											강**	수원시 팔달구 영동동 957-6 청명마을 삼익아파트 324-1304	일부 가처분	
209	기정	권선구 당수동	437-6	대	7,206	7,206	7,206	국(기획재정부)						
210	기정	권선구 당수동	437-19	임	22,945	22,945	22,945	국(기획재정부)						
211	기정	권선구 당수동	437-20	임	336	336	336	국(기획재정부)						
212	기정	권선구 당수동	437-21	도	224	224	224	국(기획재정부)						
213	기정	권선구 당수동	437-22	임	93	93	93	국(기획재정부)						
214	기정	권선구 당수동	437-23	임	116	116	116	국(기획재정부)						
215	기정	권선구 당수동	439	잡	591	591	591	유**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 439					
216	기정	권선구 당수동	439-1	전	211	211	211	유**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 439					
217	기정	권선구 당수동	439-2	전	1,073	1,073	1,073	유**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 439					
218	기정	권선구 당수동	440	전	5,169	5,169	5,169	국(기획재정부)						
219	기정	권선구 당수동	441-4	답	389	389	389	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서로39번길 40-5 (서둔동)		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 86-9, 나동 101호(조원동, 장안아파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20	기정	권선구 당수동	441-3	답	1,323	1,323	1,323	박**	경기도 의왕시 갈미로 64, 103동 903호(내손동, 반도보라빌리지1단지)	1/2				
								이**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51번길 26-23, 107동 1804호(당정동, 당정마을엘지아파트)	1/2				
221	기정	권선구 당수동	442-1	전	872	872	872	국(기획재정부)						
222	기정	권선구 당수동	446-6	전	1,275	1,275	1,275	국(기획재정부)						
223	기정	권선구 당수동	447	대	456	456	456	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 119번길 108(당수동)		수원농협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	근저당권	
224	기정	권선구 당수동	448-9	임	259	259	259	배**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 518					
225	기정	권선구 당수동	467-3	대	327	327	327	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19번길 14-40(당수동)		수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교동)	근저당권	
226	기정	권선구 당수동	467-4	도	11	11	11	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19번길 14-40(당수동)		수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교동)	근저당권	
227	기정	권선구 당수동	468-3	전	2,642	2,642	2,642	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94-6	1/2	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53-10 아성맨션 다-302	근저당	
								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1 주공아파트 1119-203	1/2	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53-10 아성맨션 다-302	근저당	
228	기정	권선구 당수동	469-1	전	304	304	304	고**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259-12					
229	기정	권선구 당수동	469-2	전	2,380	2,380	2,380	고**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259-12					
230	기정	권선구 당수동	470	대	713	713	713	서**	군포시 금정동 45-9					
231	기정	권선구 당수동	470-1	도	36	36	36	서**	군포시 금정동 45-9					
232	기정	권선구 당수동	470-2	도	15	15	15	서**	군포시 금정동 45-9					
233	기정	권선구 당수동	471	대	588	588	588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49-1					
234	기정	권선구 당수동	472	임	2,360	2,360	2,360	박**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7 아이파크 삼성동사우스윙 403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5	근저당	
235	기정	권선구 당수동	473-1	전	1,689	1,689	1,689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49-1					
236	기정	권선구 당수동	473-2	전	1,636	1,636	1,636	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19번길 66-61(당수동)		화성삼덕신용협동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1길 20	근저당권, 지상권	
237	기정	권선구 당수동	474	대	533	533	533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49-1					
238	기정	권선구 당수동	474-1	대	41	41	41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49-1					
239	기정	권선구 당수동	474-2	도	9	9	9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49-1					
240	기정	권선구 당수동	474-3	도	12	12	12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49-1					
241	기정	권선구 당수동	475	전	337	337	337	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76					
242	기정	권선구 당수동	476-1	전	800	800	800	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76					
243	기정	권선구 당수동	476-2	대	526	526	526	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501					
244	기정	권선구 당수동	476-3	대	304	304	304	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19번길 66-61(당수동)		화성삼덕신용협동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1길 20	근저당	
245	기정	권선구 당수동	476-4	도	10	10	10	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501					
246	기정	권선구 당수동	477-2	전	920	920	920	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15번길 19-10,104동 301호(당수동,한라비발디아파트1단지)		반월농업협동조합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37(건건동)	근저당	
247	기정	권선구 당수동	477-1	전	1,193	1,193	1,193	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30번길 22, 103동 704호(천천동,한일아파트)					
248	기정	권선구 당수동	478-4	전	708	708	708	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13번길 1, 3층동(영화동)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수원북문지점)	근저당, 지상권	
249	기정	권선구 당수동	480-8	임	9,734	9,734	9,734	박**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50-33,1층	3111.5/13116				
								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76	670/13116				
								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69-1	3111.5/13116				
								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15번길 19-10, 105동 2002호(당수동, 한라비발디아파트1단지)	3111.5/13116				
								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18-15	3111.5/13116				
250	기정	권선구 당수동	480-2	임	291	291	291	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 81(지동)					
251	기정	권선구 당수동	480-9	임	3,080	3,080	3,080	유**	의왕시 삼동 170-34	1/2				
								안**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242-1 반포한양아파트 5동 505	1/2				
252	기정	권선구 당수동	480-4	임	668	668	668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7-1					
253	기정	권선구 당수동	480-10	임	846	846	846	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519-1					
254	기정	권선구 당수동	480-7	임	3,112	3,112	3,112	박**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50-33,1층	3111.5/13116				
								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76	670/13116				
								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69-1	3111.5/131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기정	변경							
										16				
								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15번길 19-10, 105동 2002호(당수동, 한라비발디아파트1단지)	3111.5/13116				
								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18-15	3111.5/13116				
255	기정	권선구 당수동	481	답	238	238	238	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90-5 대한대우아파트 124-303		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88 늘푸른벽산아파트 108-1203	근저당	
256	기정	권선구 당수동	482	답	4,136	4,136	4,136	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25번길 17, 나동 302호(영화동,정진그린맨션)		수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	근저당	
257	기정	권선구 당수동	483	답	4,777	4,777	4,777	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31번길 16, 204동305호(당수동,한라비발디아파트2단지)	1/2	반월농업협동조합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36-6	근저당,지상권	
								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15번길 53, 103동 1903호(당수동,인정프린스아파트)	1/2	반월농업협동조합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36-6	근저당	
258	기정	권선구 당수동	484	답	5,825	5,825	5,825	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61					
259	기정	권선구 당수동	485-1	답	4,615	4,615	4,615	조**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 519					
260	기정	권선구 당수동	485-2	답	4,063	4,063	4,063	박**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828-5		수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0-9	근저당	
261	기정	권선구 당수동	486	전	208	208	208	박**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828-5					
262	기정	권선구 당수동	487-1	답	4,360	4,360	4,360	한**	서울 종로구 통인동 153					
263	기정	권선구 당수동	488-1	답	1,070	1,070	1,070	이**	서울 강남구 반포동 18-1 주공아파트 211동 208	1/6				
								이**	안산시 고잔동 675 주공아파트 524동 405	1/6				
								이**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 149-9	1/6				
								이**	수원시 고등동 172-31	1/6				
								이**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96-1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압류	
								이**	수원시 조원동 665-9 연립주택3동102	1/6				
264	기정	권선구 당수동	586-6	창	49	49	49	조**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 449(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19번길 29-7(당수동))					
265	기정	권선구 당수동	590-9	답	3	3	3	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30, 717동 1002호(사동, 안산고잔7차푸르지오)					
266	기정	권선구 당수동	592	전	53,963	53,963	53,963	국(기획재정부)						
267	기정	권선구 당수동	592-3	전	12	12	12	수원시						
268	기정	권선구 당수동	592-4	전	12	12	12	수원시						
269	기정	권선구 당수동	592-5	전	94	94	94	국(기획재정부)						
270	기정	권선구 당수동	592-8	전	3	3	3	수원시						
271	기정	권선구 당수동	688-1	도	3,203	3,203	3,203	수원시						
272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0-3	도	21	21	21	수원시						
273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0-4	도	21	21	21	심**	호매실동 453-22 한미스타빌라 202	3/7				
								정**	호매실동 453-22 한미스타빌라 202	2/7				
								정**	호매실동 453-22 한미스타빌라 202	2/7				
274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0-5	도	104	104	104	수원시						
275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1-4	도	108	108	108	수원시						
276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1-5	도	31	31	31	김**	수원시 장안동 87					
277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1-7	도	12	12	12	수원시						
278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1-10	도	24	24	24	수원시						
279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1-11	도	31	31	31	수원시						
280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2-5	도	150	150	150	수원시						
281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2-6	도	77	77	77	수원시						
282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2-7	답	195	195	195	수원시						
283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2-9	답	2	2	2	수원시						
284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2-17	임	4	4	4	이**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 시 크레스센타매릴랜드가 5024	1/5				
								이**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398	1/5				
								이**	의왕시 오전동 35-11 정우빌라 에이동 302호	1/5				
								이**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397-8	1/5				
								이**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70 대한대우아파트 117-1101	1/5				
285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2-20	답	77	77	77	수원시						
286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2-21	답	56	56	56	수원시						
287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3-3	전	13	13	13	수원시						
288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4-3	임	26	26	26	수원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기정	변경							
289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6-10	임	67	67	67	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22					
290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6-4	임	67	67	67	수원시						
291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6-5	임	5	5	5	수원시						
292	기정	권선구 당수동	696-6	임	39	39	39	수원시						
293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5	구	8	8	8	국(농림축산식품부)						
294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31	구	25	25	25	국(농림축산식품부)						
295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32	구	6,058	6,058	6,058	국(농림축산식품부)						
296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33	구	5	5	5	국(농림축산식품부)						
297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34	구	29	29	29	국(농림축산식품부)						
298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35	구	22	22	22	국(농림축산식품부)						
299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36	구	14	14	14	국(농림축산식품부)						
300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37	구	18	18	18	국(농림축산식품부)						
301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38	구	176	176	176	국(농림축산식품부)						
302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9	구	193	193	193	국(농림축산식품부)						
303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11	구	74	74	74	국(농림축산식품부)						
304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16	구	7	7	7	국(농림축산식품부)						
305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7-18	구	11	11	11	국(농림축산식품부)						
306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8-11	도	33	33	33	국(국토교통부)						
307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8-53	도	368	368	368	국(국토교통부)						
308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8-54	도	21	21	21	국(국토교통부)						
309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8-13	도	2,090	2,090	2,090	국(국토교통부)						
310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8-17	도	65	65	65	국(국토교통부)						
311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8-18	도	70	70	70	국(국토교통부)						
312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8-21	도	35	35	35	국(국토교통부)						
313	기정	권선구 당수동	729-1	구	396	396	396	국(농림축산식품부)						
314	기정	권선구 당수동	730-2	도	2,385	2,385	2,385	국(국토교통부)						
315	기정	권선구 당수동	740	도	623	623	623	국(국토교통부)						
316	기정	권선구 당수동	740-2	도	81	81	81	국(국토교통부)						
317	기정	권선구 당수동	740-3	도	35	35	35	국(국토교통부)						
318	기정	권선구 당수동	산93-1	임	204	204	204	수원시						
319	기정	권선구 당수동	산106	도	326	326	326	국(건설교통부)						
합 계					970,644	970,644	970,644							